

개정문화재보호법 해설 (改正文化財保護法 解說)

金鍾焱
(文化財管理局 行政事務官)

目 次

- | | |
|---------------|-------------------|
| I. 序 | III. 文化財保護法施行令 改正 |
| 1. 改正의 意義 | IV. 文化財保護法施行規則 改正 |
| 2. 文化財保護法 沿革 | V. 結論 |
| II. 文化財保護法 改正 | |

I. 서(序)

1. 문화재관계법령(文化財關係法令) 개정(改正)의 의의(意義)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이 1982年 12月 31日 개정(改正)·공포(公布)되었고, 동법시행령(同法施行令)과 시행규칙(施行規則)이 1983年 8月 3日과 9月 19日 각각 개정(改正)·공포(公布)됨으로써 3년간(年間)에 걸친 법령정비작업(法令整備作業)이 끝났다.

법(法)이란 사회생활(社會生活)의 행동규범(行動規範)이자 인간(人間)이 따르고 준수(遵守)하여야 하는 도리(道理)이며, 시대(時代)의 생활의식(生活意識)과 여건(與件)이 달라지고 가치관(價値觀)이 변(變)하여 새로운 제도(制度)를 필요로 할 때 법(法)은 개정(改正)되고 다듬어져 보다 합리적(合理的)이고 민주적(民主的)으로 개선(改善)·발전(發展)되어야 하는 것이다.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은 1962年 1月 10日 제정(制定)된 이후 여섯차례의 부분개정(部分改正)이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정비(整備)·개정(改正)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구상(語句上) 수정(修正)을 요하거나 법운영상(法運營上) 불합리(不合理)한 사항(事項)이 있었으며, 조문간(條文間)에 서로 연결이 되지 않고 단절(斷絶)된 점이 많았다. 따라서 이번의 개정(改正)은 그 동안의 부분적(部分的)인 개정사항(改正事項)을 정리하고 법(法)의 규정(規定)과 그 운영상(運營上)의 문제점(問題點)을 보완(補完)하여 여러 가지 불합리(不合理)한 제도(制度)를 개선(改善)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각종(各種) 개별적으로 규정(規定)하였던 「지정문화재 관람료징수(指定文化財觀覽料徵收) 등(等)에 관한 규정(規定)」(1973. 8. 22 문공부령(文公部令) 제35호), 「지정문화재수리기술자(指定文化財修理技術者)·기능자(技能者) 및 수리업자등

료규정(修理業者登錄規定)」(1970. 1. 1 문공부령(文公部令) 第22號) 「문화재안내표지(文化財案内標識)에 관한 규정(規定)」(1973. 6. 28 문공부령(文公部令) 第33號), 「문화재수리공사감독(文化財修理工事監督) 및 준공검사규칙(竣工檢查規則)」(1975. 8. 28 문공부령(文公部令) 第47號), 「문화재보존관리기술요원(文化財保存管理技術要員)의 양성(養成)을 위한 장학금지급규정(獎學金支給規定)」(1972. 9. 2 문공부령(文公部令) 第28號) 등 5개부령(個部令)과 새로 부령(部令)으로 규정(規定)하려고 하였던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 보호(保護)·육성사항(育成事項)을 통(統)·폐합(廢合)하여 시행규칙(施行規則)에 규정(規定)함으로써 법령(法令)의 체계(體系)를 단일화(單一化)하였고, 법(法)의 적용(適用)과 운영상(運營上)의 혼란(混亂)을 방지(防止)하도록 하였다.

더욱이 이번의 법령정비(法令整備)는 第5공화국(共和國)의 출범(出帆)이후 정의사회구현(正義社會具現)과 선진조국창조(先進祖國創造)의 국가(國家)의 총력(總力)을 기울이고 있는 것과 맞추어 각종(各種) 민원행정(民願行政)을 개선(改善)하였고 성장발전(成長發展)을 저해(沮害)하는 행정제도(行政制度)와 법령(法令)을 정비(整備)함으로써 문화재(文化財)를 효율적(效率的)으로 관리(管理)하고 국민(國民)의 문화적(文化的) 향상(向上)과 국가선양(國家宣揚)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契機)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意義)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다른 법령(法令)도 마찬가지겠지만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은 특히 법조문(法條文)과 내용(內容)이 많고 용어(用語)가 어려운 점(點)이 많아 한두번 읽어서는 쉽게 그 내용(內容)을 이해(理解)하기 힘들다고 한다. 법개정작업(法改正作業)에 있어서도 조문(條文)을 올바르게 이해(理解)하고 정확(正確)히 규정(規定)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빈번한 토의(討議)와 자료수집(資料蒐集)을 통하여 개정작업(改正作業)에 완벽을 기하려고 노력(努力)하였다. 나아가서 법(法)은 잘 개정(改正)하는 것도 중요(重要)하지만 개정(改正)된 법(法)을 얼마나 잘 이해(理解)하고 준수(遵守)하며 합리적(合理的)으로 운영(運營)하느냐에 따라 업무(業務)의 능률(能率)을 올릴 수 있고 성장발전(成長發展)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개정법령(改正法令)을 쉽게 이해(理解)하고 앞으로 규정(規定)을 적용(適用)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을 주고자 법(法)과 시행령(施行令) 및 시행규칙(施行規則)을 구분(區分)하여 그 개정내용(改正內容)과 취지(趣旨)를 자세하게 설명해 보았다. 설명요령(說明要領)은 법령(法令)의 조문순서(條文順序)에 구애됨이 없이 개정내용(改正內容)별로 정리(整理)하여 설명(說明)하였고 관련조문(關聯條文)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조항번호(條項番號)를 반드시 기재(記載)하였다.

2.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의 연혁(沿革)

법(法) 개정내용(改正內容)을 설명(說明)하기 전에 먼저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의 연혁(沿革)과 개정과정(改正過程)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문화재(文化財)를 보호(保護)하기 위한 법령(法令)으로서는 1916年 7월에 조선총독부령(朝鮮總督府令) 第52號로 제정(制定)된 「고적금유물보존규칙(古蹟及遺物保存規則)」이 최초(最初)의 법원(法源)이었으며, 그 후 1933年 8월 9일에 조선총독부령(朝鮮總督府令) 第6號로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朝鮮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令)」이 제정(制定)되었고 동령시행규칙(同令施行規則)이 1933年 12월 5일 부령(府令) 第136號로 제정시행(制定施行)되면서 「고적금유물보존규칙(古蹟及遺物保存規則)」이 폐지(廢止)되었다. 따라서 1962年 문화재

보호법(文化財保護法)이 법률(法律) 第962號로 제정(制定)되기 전까지는 1933年 제정(制定)된 보존령(保存令)에 의하여 문화재관리(文化財管理)를 하여 왔고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이 제정공포(制定公布)됨으로써 비로소 본격적인 문화재보호관리체계(文化財保護管理體系)가 확립(確立)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이 제정(制定)된 후에도 법규정상(法規定上)의 문제점(問題點)을 시정(是正)하고 새로운 문화재보호시책(文化財保護施策)의 효율적(效率的)인 시행(施行)을 위하여 여러차례 부분적(部分的)인 개정(改正)이 이루어졌으며 이번 개정(改正)은 第7차개정(次改正)으로서 전문개정(全文改正)이라는데 그 특징(特徵)이 있다.

특히 1962년도(年度)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의 제정(制定) 당시에는 국가지정문화재(國家指定文化財)에 관한 조항(條項)을 규정(規定)하였으나 1970년도(年度) 第5차개정(次改正)을 하면서 시(市)·도지사(道知事)가 지정(指定)·관리(管理)하는 「지방문화재(地方文化財)」와 문화공보부장관(文化公報部長官)이 「지정문화재(指定文化財)이외의 문화재(文化財)」를 새로 신설(新設)하는 등 계속적으로 보완(補充)되어 왔던 것이다.

[참고 1]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의 개정연혁(改正沿革)

개정년월일 (改正年月日)	주요개정내용(主要改正內容)
第1차개정 (次改正) (1963. 2.9 법률(法律) 第 1265號)	1. 문화재위원회(文化財委員會)내 第1분과위원회(分科委員會) 및 제(第)3분과위원회(分科委員會)의 관장사업(管掌事業)을 조정(調整)함(법(法)§5) 2. 매장문화재(埋藏文化財)의 처리방법(處理方法)은 국가(國家)가 발굴(發掘)한 것과 기타의 자(者)가 발굴(發掘)한 것을 달리함(법(法)§54①) 3. 문화재관리특별회계(文化財管理特別會計)의 설치(設置) 근거(根據)를 마련함(법(法) §58의 2) 4. 구황실재산법(舊皇室財産法)을 폐지(廢止)하고 이와 관련된 재산(財産)을 국가재산법(國家財産法)에 맞추어 정비(整備)하고 문화재관리특별회계(文化財管理特別會計)에 진입(轉入)토록함(부칙(附則)§2)
第 2 차 개 정 (次改正) (1963. 12. 5 법률(法律) 第1465號)	잡종재산처분시(雜種財産處分時)에 이은(李垠)과 그 배우자(配偶者)에게 재산(財産)을 양여(讓與)할 수 있도록 함(부칙(附則)§2②)
第3차개정(次 改正) (1963. 12. 16 법률(法律) 第 1583號)	헌법개정(憲法改正)에 따라 권력구조변경(權力構造變更)에 수반하여 일부 조항(條項)을 개정(改正)함.

개정년월일 (改正年月日)	주요개정내용(主要改正內容)
第4차 개정(次 改正) (1965. 6. 30 법률(法律) 第 1701號)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잡종재산처분(雜種財産處分)과 그 가격결정(價格決定)에 관한 절차(節次)를 규정(規定)함 (부칙(附則) §3, §4) 2. 점유자(占有者)에 대한 매수요구(買受要求) 등과 계약해제(契約解除)에 관한 규정(規定)을 신설(新設)함(부칙(附則)§5,§6) 3. 국가재산법(國家財産法)과 예산회계법(豫算會計法)의 준용(準用)을 규정(規定)함 (부칙(附則)§7)
第5차 개정(次 改正) (1970. 8. 10 법률(法律)第22 33號)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재위원회(文化財委員會)의 “의결사항(議決事項)”을 “심의사항(審議事項)”으로 하여 자문기관(諮問機關)으로서의 기능(機能)을 명백(明白)히 함(법(法)§4) 2.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의 보유자인정제도(保有者認定制度) 신설(新設)함(법(法)§8②) 3. 지정서교부제도(指定書交付制度)(법(法)§12의2), 국가(國家)에 의한 관리(管理)(법(法)§19의2), 수리(修理)(부칙(附則)§19의3), 기록작성(記錄作成)(법(法)§19의4), 수출금지(輸出禁止)(법(法)§20의2), 관리위탁(管理委託) 및 기술지도(技術指導)(법(法)§21의2) 등을 신설(新設)함 4. “지정문화재(指定文化財) 이외의 문화재(文化財)”에 관한 장(章)(법(法)第3장(章)의2)을 신설(新設)하였고, 동산문화재(動産文化財)를 등록(登録)토록 하였으며(법(法)§41의6) 현장변경(現場變更) 등을 제한(制限)함(법(法)§41의2) 5. “지방문화재(地方文化財)”에 관한 장(章)(법(法)第5장(章)의2)을 두어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장(長)이 지방문화재(地方文化財)를 지정(指定)·보호(保護)하도록 함 6. 매매업자등록제도(賣買業者登錄制度)(법(法)§56의2), 비상시(非常時)의 문화재보호(文化財保護)(법(法)§58의 5), 문화재매입(文化財買入)(법(法)§58의6)에 관한 조항(條項)을 신설(新設)함 7. 문화재(文化財)의 해외수출(海外輸出), 절취(截取), 은닉(隱匿), 훼손(毀損) 기타 범죄자(犯罪者)에 대한 벌칙(罰則)을 강화(強化)함
第6차 개정(次 改正) (1973. 2. 5 법률(法律)第24 68號)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람료(觀覽料) 징수관리(徵收管理)가 부적당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 등으로 하여금 징수(徵收)·관리(管理)할 수 있게 함(법(法)§36②) 2. 토목(土木) 기타 건설공사(建設工事)로 인하여 수몰(水沒) 훼손(毀損)등의 우려로 당해 문화재(文化財)를 이전(移轉) 및 보존(保存)할 경우 그 소요경비(所要經費)는 건설공사시공자(建設工事施工者)가 부담(負擔)하도록 함 (법(法)§44의2) 3. 문화재매매업자(文化財賣買業者) 등록제(登錄制)를 허가제(許可制)로 변경(變更)함(법(法)§56의 2) 4. 제보자(提報者)·체포자(逮捕者)에게 보상금(報償金)을 줄 수 있도록 함(법§57의2) 5. 보호구역내(保護區域內)의 수용(收用)과 사용(使用)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土地收用法)을 준용(準用)하도록 함(법(法)§58의6)

II.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 개정(改正)

(82. 12. 31공포(公布):법률(法律)第3664號)

순서(順序)

1. 문화재(文化財)의 개념(概念) 보완(補完)
 - 가. 문화재(文化財)의 정의(定議)
 - 나. 매장문화재(埋藏文化財)의 개념(概念)
2. 문화재(文化財)의 보호관리체계(保護管理體系) 개선(改善)
 - 가. 문화재(文化財)의 명칭(名稱) 변경(變更)
 - 나.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 보유자(保有者) 인정제도(認定制度)
 - 다. 문화재(文化財) 가지정제도(假指定制度)
 - 라. 시(市)·도지정문화재(道指定文化財)의 지정(指定)·관리체계(管理體系)
 - 마. 시(市)·도지정문화재(道指定文化財)의 준용규정(準用規定) 구체화(具體化)
3. 문화재(文化財)의 국가관리(國家管理)의 강화(強化)
 - 가. 국가관리(國家管理) 범위(範圍)의 확대(擴大)
 - 나. 문화재(文化財)의 매입규정(買入規定) 강화(強化)
 - 다. 국유문화재(國有文化財)의 특례규정(特例規定) 강화(強化)
4. 민원행정(民願行政) 개선(改善)
 - 가. 보유자(保有者) 인정서(認定書) 반환제도(返還制度)
 - 나. 허가사항(許可事項) 완화(緩和)
 - 다. 문화재(文化財) 국외반출(國外搬出) 허가제도(許可制度)
 - 라. 비문화재(非文化財) 허가제도(許可制度)
 - 마. 신고사항(申告事項) 완화(緩和)
 - 바. 발견매장문화재(發見埋藏文化財)의 보상금(報償金) 지급기간(支給期間) 단축(短縮)
5. 행정지도(行政指導) 개선(改善)
 - 가. 지정(指定) 또는 인정(認定)의 효력발생시기(效力發生時期)
 - 나. 문화재수리제도(文化財修理制度)
 - 다.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 보호(保護)·육성(育成)
 - 라. 보조금교부(補助金交付)·사용(使用) 절차(節次)
 - 마. 문화재매매업자(文化財賣買業者)의 허가제도(許可制度)
 - 바. 문화재사범(文化財事犯) 체포(逮捕) 유공자(有功者) 보상금(報償金) 지급(支給)
 - 사. 문화재보호단체(文化財保護團體) 지원(支援)·육성(育成)
6. 외국문화재(外國文化財)의 보호(保護)
7. 기타 개정사항(改正事項)
 - 가. 문화재위원회(文化財委員會) 운영(運營)
 - 나. 문화재(文化財) 공개비용(公開費用) 부담(負擔)
 - 다. 발굴(發掘)의 제한(制限)
 - 라. 토지(土地)의 수용(收用) 또는 사용(使用)
 - 마. 신설조항(新設條項)
 - (1) 법체계상(法體系上) 규정(規定)되어야 할 조항(條項)
 - (2) 기록(記錄)의 작성(作成) 보존(保存)
 - (3) 다른 법률(法律)과의 관계
 - 바. 부칙(附則)의 정비(整備)
8. 벌칙조항(罰則條項) 개정(改正)
9. 불필요(不必要) 또는 불합리(不合理)한 조항(條項) 삭제(削除)

1. 문화재(文化財)의 개념(概念) 보완(補完)

가. 문화재(文化財)의 정의(定義) 보완(補完)(법(法)§2①)

(1) 법상(法上) 문화재(文化財)의 정의(定義)는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기념물(記念物)·민속자료(民俗資料)로 구분(區分)하여 “우리 나라의 문화적 소산(文化的 所産)으로서 역사상(歷史上), 예술상(藝術上), 학술상(學術上), 관상상(觀賞上)의 가치(價値)가 큰 것”이라고 하였으나, 신안(新案) 앞바다에서 인양(引揚)된 문화재(文化財)와 같이 외국(外國)의 문화재(文化財)도 문화재적(文化財的) 가치(價値)가 있는 것을 보호(保護)·관리(管理)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의(定義)에서 “우리 나라”를 삭제(削除)하였다.

(2) 기념물(記念物)의 정의(定義)에 있어서 개정전(改正前)에는 “사적지(史蹟地), 경승지(景勝地), 동물(動物), 식물(植物), 광물(鑛物)로서 역사상(歷史上)·예술상(藝術上)·학술상(學術上)·관상상(觀賞上) 가치(價値)가 큰 것”이라고 규정(糾正)하였으나 이를 개별적으로 구분(區分)하여 「사적지(史蹟地)로서 역사상(歷史上)·학술상(學術上)」, 「경승지(景勝地)로서 학술상(藝術上)·관상상(觀賞上)」, 「동물, 식물, 광물, 동굴(動物·植物·鑛物·洞窟)로서 학술상(學術上)」 가치(價値)가 큰 것이라 규정(規定)하였으며, 특히 동물(動物)과 식물(植物)의 경우는 광릉(光陵)크낙새서식지(棲息地)(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 第11號), 낙동강하류(洛東江下流)철새도래지(渡來地)(“ 第179號)와 제주도문주란자생지(濟州道文珠蘭自生地)(“ 第19號) 등 단순히 동물(動物)과 식물(植物) 자체(自體)뿐만 아니라, 이들을 보호(保護)하기 위해서 그 서식지(棲息地)·번식지(繁殖地)·도래지(渡來地)와 자생지(自生地)도 기념물(記念物)로 지정(指定)·보호(保護)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동물(動物)은 그 “서식지(棲息地)·번식지(繁殖地)·도래지(渡來地)”를, 식물(植物)은 그 “자생지(自生地)”를 문화재(文化財)의 정의(定義)에 포함하였다.

[참고2] 문화재(文化財)의 정의(定義) 및 구분(區分)(법(法) §2)

구분(區分)	대상(對象)	가치기준(價値基準)	국가지정(國家指定)	시도지정(市道指定)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	건조물(建造物)·전적(田籍)·서적(書跡)·고문서(古文書)·조각(彫刻)·공예품(工藝品) 등 유형(有形)의 문화적(文化的) 소산(所産) 이에 준(準)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역사상(歷史上)·예술상(藝術上) 가치(價値)가 큰 것	국보(國寶)·보물(寶物)	(경기도)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경기도)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	연극(演劇)·음악(音樂)·무용(舞踊)·공예기술(工藝技術) 등 무형(無形)의 문화적(文化的) 소산(所産)	역사상(歷史上)·예술상(藝術上) 가치(價値)가 큰 것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	(경기도)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

구분(區分)	대상(對象)	가치기준(價值基準)	국가지정(國家指定)	시도지정(市道指定)
기념물(記念物)	사적지(史蹟地)·패총(貝塚)·고분(古墳)·성지(城址)·궁지(宮址)·요지(窯址)·유물포함층(遺物包含層) 등 경승지(景勝地) 동물(動物)(서식지(棲息地)·번식지(繁殖地)·도래지(渡來地))·식물(植物)(자생지(自生地))·광물(鑛物)·동굴(洞窟)	역사상(歷史上)·학술상(學術上) 가치(價值)가 큰 것 예술상(藝術上)·관상(觀賞上) 가치(價值)가 큰 것 학술상(學術上) 가치(價值)가 큰 것	사적(史蹟) 명승(名勝)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	(경기도) 기념물(記念物) (경기도) 문화재자료(文化財資料)
민속자료(民俗資料)	의식주(衣食住)·생업(生業)·신앙(信仰)·연중행사(年中行事) 등에 관한 풍속(風俗)·관습(慣習)·이에 사용되는 의복(衣服)·기구(器具)·가옥(家屋) 등	국민생활(國民生活)의 추이(推移)를 이해(理解)함에 불가결(不可缺)한 것	중요민속자료(重要民俗資料)	(경기도) 민속자료(民俗資料) (경기도) 문화재자료(文化財資料)

나. 매장문화재(埋藏文化財)의 개념(概念) 보완(補完)(법§43)

매장문화재(埋藏文化財)의 개념(概念)을 “토지(土地)나 기타 물건(物件)에 포장된 문화재(文化財)”로 한정(限定)하고 있었으나(구법(舊法)§42), 신안해저인양문화재(新案海底引揚文化財)와 같이 해저(海底)에서도 문화재(文化財)가 발견(發見)될 수 있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明示)하여 “토지(土地)나 해저(海底) 또는 건조물(建造物) 등에 포장(包藏)된 문화재(文化財)”로 보완(補完)하여 규정(規定)하였다.

2. 문화재(文化財) 보존관리체계(保存管理體系) 개선(改善)

가. 문화재(文化財)의 명칭(名稱) 변경(變更)(법(法)§2②)

개정전(改正前)	개정(改正)
1. 지정문화재(指定文化財) (국보(國寶)·보물(寶物)·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사적(史蹟)·명승(名勝)·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중요민속자료(重要民俗資料)) 지정(指定):문화공보부장관(文化公報部長官)	1. 국가지정문화재(國家指定文化財) 좌동(左同) 지정(指定):문화공보부장관(文化公報部長官)
2. 지방문화재(地方文化財) 지정(指定):시(市)·도지사(道知事)	2. 지방문화재(地方文化財) 지정(指定):시(市)·도지사(道知事)
3. 지정문화재(指定文化財) 이외의 문화재(文化財) 지정(指定)(고시(告示)):문화공보부장관(文化公報部長官)	3. 문화재자료(文化財資料) 지정(指定):시(市)·도지사(道知事)

(1) 개정(改正)전에는 지정문화재(指定文化財)의 개념(概念)을 국가지정문화재(國家指定文

화財)에 한정(限定)하였으나, 이를 시(市)·도지정문화재(道指定文化財)와 문화재자료(文化財資料)까지 포함하도록 하였다.

(2) 또한 「지방문화재(地方文化財)」를 「시(市)·도지정문화재(道指定文化財)」로 명칭(名稱)을 바꾼 것은 각 시(市)·도(道)마다 지정(指定)한 문화재(文化財)가 어느 시(市)·도(道)의 것인지 구분(區分)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를 명백(明白)히 하려는 것이며 “지정(指定)”앞에 시(市)·도(道)의 명칭(名稱)을 표시(表示)하도록 하였다(법(法)§55④). 예를 들면, 경기도지정문화재 수어장대는 “경기도유형문화재 제1호 수어장대”라고 하고, 부산직할시지정문화재 동래학춤은 “부산직할시무형문화재 제3호 동래학춤”이라고 하여야 한다.

(3) 「지정문화재(指定文化財)이외의 문화재(文化財)」를 「문화재자료(文化財資料)」로 변경(變更)한 이유는 사회(社會)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일반용어(一般用語)로서의 「지정(指定)이외의 문화재(文化財)」는 지정(指定)되지 아니한 모든 문화재(文化財)를 지칭(指稱)하는 것이나,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에서 말하는 「지정(指定)이외의 문화재(文化財)」는 문화공보부장관(文化公報部長官)이 지정(指定)이외의 문화재(文化財)로 특별히 지정(指定)하여 고시(告示)하는 문화재(文化財)만을 의미(意味)하는 것이므로, 이는 용어(用語)의 해석(解釋)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문화재자료(文化財資料)」로 바꾸었다.

(4) 더욱이 문화재(文化財)의 구분(區分)이 문화재적(文化財的) 가치(價値)에 의해서 지정권자(指定權者)가 명백(明白)히 구분(區分)되지 않았다. 즉 시(市)·도지사(道知事)가 지정(指定)하는 「지방문화재(地方文化財)」보다 문화재적(文化財的) 가치(價値)가 적은 「지정(指定)이외의 문화재(文化財)」를 문화공보부장관(文化公報部長官)이 고시(告示)·관리(管理)하는 것은 불합리(不合理)함으로 이를 개선(改善)하여 명칭(名稱)이 바뀐 「문화재자료(文化財資料)」에 대해서는 시(市)·도지사(道知事)가 지정(指定)하여 관리(管理)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재(文化財)의 지정관리체계(指定管理體系)를 문화재적(文化財的) 가치(價値)의 경중(輕重)에 따라 분명하게 구분(區分)하였다.

나.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 보유단체(保有團體) 인정(認定)(법(法)§5②)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를 지정(指定)할 때에는 그 보유자(保有者)를 인정(認定)하도록 규정(規定)하고 있으며 보유자(保有者)의 인정(認定), 즉 인간문화재(人間文化財)를 지정(指定)함에 있어서는 자연인(自然人)만을 지정(指定)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안동차전(安東車戰)놀이(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 제24호(護)), 고싸움놀이(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 제33호) 등과 같이 다수(多數)에 의하여 하나의 종목(種目)이 형성(形成)되는 이른바, 단체종목(團體種目)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단체종목자체(團體種目自體)를 인정(認定)하도록 하는 규정(規定)이 없어 생계비(生計費) 보조(補助) 등의 지원(支援)에 불합리(不合理)한 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정(改正)하여 단체종목(團體種目)일 경우에는 자연인(自然人) 또는 특정인(特定人)이 아닌 단체종목자체(團體種目自體)를 인정(認定)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문화재(文化財) 가지정제도(假指定制度) 개선(改善)(법(法)§13)

문화재(文化財)의 지정(指定) 전(前)에 긴급할 필요가 있고 문화재위원회(文化財委員會)의 심의(審議)를 거칠 시간적(時間的)인 여유(餘裕)가 없을 때에 중요문화재(重要文化財)로 가

지정(假指定)하는 대상(對象)은 모든 국가지정문화재(國家指定文化財)의 종류(種類)에 대하여 적용하였다(구법(舊法)§16)

그러나 동산문화재(動產文化財)인 경우에는 문화재(文化財)의 지정(指定)을 위한 조사(調査)나 지정(指定)에 필요한 부속서류의 구비 등에 많은 시간(時間)이 소요(所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同) 문화재(文化財)의 도난(盜難)·훼손(毀損) 등의 예방조치(豫防措置)에 있어서도 동산(動產)이기에 별도의 조치(措置)가 없어도 용이하게 그 안전대책(安全對策)을 취할 수 있으므로 가지정제도(假指定制度)를 폐지하였으며, 또한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의 가지정(假指定)은 사람이기에 가지정(假指定)에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이와는 달리 사적(史蹟)·명승(名勝)·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과 중요민속자료(重要民俗資料) 등은 일정한 지역(地域)을 포괄하고 있어 동(同) 문화재(文化財)의 지정(指定)에 있어서 지적(地積)의 조사(調査)·토지(土地)의 소유자조사(所有者調査) 등 지정행위(指定行爲)에 따르는 많은 부속서류의 구비에 사전조사(事前調査)가 필요하며 일정기간의 사전조치(事前措置)가 없을 때에는 지정(指定)되기까지의 기간동안 동(同) 문화재(文化財)에 대한 도굴(盜掘)·도난(盜難)·훼손(毀損)등을 예방(豫防)할 수 있는 시간적(時間的) 여유(餘裕)를 가져야 하므로 가지정제도(假指定制度)를 그대로 두었다. 참고로 일본(日本)의 경우는 기념물에 한하여 가지정제도(假指定制度)를 두고 있다.

라. 시(市)·도지정문화재(道指定文化財)의 지정관리(指定管理) 체계개선(體系改善)

(1) 지방문화재(地方文化財)를 「시(市)·도지정문화재(道指定文化財)」로 명칭(名稱)을 변경(變更)하였다.

(2) 시(市)·도지사(道知事)는 시(市)·도지정문화재(道指定文化財)로 지정(指定)되지 아니한 문화재(文化財)중 향토문화보존상(鄕土文化保存上) 필요하다고 인정(認定)되는 것을 「문화재자료(文化財資料)」로 지정(指定)할 수 있도록 근거(根據)를 마련하고, 개정전의 “지정문화재(指定文化財)이외의 문화재(文化財)”로 고시(告示)한 문화재(文化財)와 등록(登錄)된 동산문화재중(動產文化財中) 가치(價値)가 있는 것을 문화재자료(文化財資料)로 지정하여 보존(保存) 관리(管理)하도록 하였다.(법(法)§55①-②).

(3) 문화재위원회(文化財委員會)가 심의(審議)한 문화재(文化財)중 그 가치(價値)가 국가지정문화재(國家指定文化財)의 수준(水準)에는 도달하지 아니하나 시(市)·도지정문화재(道指定文化財) 또는 문화재자료(文化財資料)로 지정(指定)하여 보존(保存)·관리(管理)할 수 있다고 판단(判斷)되는 문화재(文化財)에 대해서는 문화공보부장관(文化公報部長官)이 시(市)·도지사(道知事)에게 권고(勸告)하도록 하였다(법(法)§55③).

(4) 시(市)·도지정문화재(道指定文化財) 및 문화재자료(文化財資料)를 지정(指定)할 때에는 그 문화재(文化財)가 어느 시(市)·도(道)에서 지정(指定)된 것인지를 명백(明白)히 하기 위하여 “지정(指定)”앞에 서울특별시(特別市) 또는 당해 직할시(直轄市)나 도(道)의 명칭(名稱)을 표시(表示)하도록 하였다(법(法)§55④).

(5) 시(市)·도지사(道知事)가 시(市)·도지정문화재(道指定文化財) 또는 문화재자료(文化財資料)를 지정(指定)하거나 그 지정(指定)을 해제(孩提)한 때와 현상변경(現狀變更) 등의 공사(工事)를 완료(完了)한 때에는 문화공보부장관(文化公報部長官)에게 지체없이 보고(報告)하여야 한다는 규정(規定)은 있으나 사후조치(事後措置)에 관한 규정(規定)이 없으므로 문화공보부장관(文化公報部長官)은 시(市)·도지사(道知事)로부터 보고(報告)를 받고 이들 행위

(行爲)가 적합(適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認定)될 때에는 그 시정(是正) 또는 필요한 조치(措置)를 명(命)할 수 있도록 추가(追加)하여 규정(規定)하였다(법(法)§57②)

마. 시(市)·도지정문화재(道指定文化財)의 준용규정(準用規定) 구체화(具體化)

시(市)·도지정문화재(道指定文化財) 및 문화재자료(文化財資料)에 관하여 국가지정문화재(國家指定文化財)에 대한 문화재(文化財)의 보호(保護)·관리(管理)에 필요한 제규정(諸規定)을 준용(準用)하도록 함으로써 각 시(市)·도(道)의 문화재(文化財)의 관리방향(管理方向)을 구체화하였다. 즉 구법(舊法)은 지방문화재(地方文化財)의 관리(管理) 또는 수리(修理)를 하는 경우에 문화공보부장관(文化公報部長官)에게 기술지도(技術指導)를 요청(要請)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規定)만을 준용(準用)하도록 하였을 뿐, 지방문화재(地方文化財)의 지정절차(指定節次), 관리(管理), 보호육성(保護育成), 공개(公開) 및 자문기관(諮問機關)의 설치(設置)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事項)을 당해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조례(條例)로 정(定)하도록 규정(規定)하고 있어 각 시(市)·도지사(道知事)는 모든 사항(事項)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조례(條例)에 규정(規定)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러한 비능률적(非能率的)인 사항(事項)을 시정(是正)하기 위하여 개정법(改正法)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國家指定文化財)의 관리(管理) 및 보호(保護), 공개(公開), 조사(調查)에 관한 사항(事項)을 시(市)·도지정문화재(道指定文化財)와 문화재자료(文化財資料)에 대부분 준용(準用)하도록 규정(規定)함으로써 별도로 조례(條例)에 규정(規定)하지 않아도 적용(適用)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정절차(指定節次)와 자문기관(諮問機關)의 설치(設置) 및 준용(準用)하지 않은 사항(事項)만을 시(市)·도조례(道條例)로 정(定)하도록 하였다. 또한 준용규정(準用規定)이 없기 때문에 지방문화재(地方文化財)에 대한 행정명령(行政命令)이나 금지행위(禁止行爲)·위반사항(違反事項) 등에 대해서 처벌(處罰)할 수 없었으나 준용규정(準用規定)을 돕으로서 국가지정문화재(國家指定文化財)와 동일(同一)한 벌칙(罰則)을 과(科)할 수 있게 하였다.

시(市)·도지정문화재(道指定文化財)와 문화재자료(文化財資料)에 대한 준용사항(準用事項)은 다음과 같다.

관리방법(管理方法)의 지시(指示)(법(法)§14)

소유자(所有者)의 관리의무(管理義務)와 관리자(管理者)(법(法)§15)

관리단체(管理團體)에 의한 관리(管理)(법(法)§16)

국가(國家)에 의한 관리(管理) 등(법(法)§17)

수리(修理)등(법(法)§18①—③)

허가사항(許可事項)(법(法)§20)

수출(輸出)등의 금지(禁止)(법(法)§21①—②)

허가취소(許可取消)(법(法)§22)

기술지도(技術指導)(법(法)§23②)

행정명령(行政命令)(법(法)§25)

신고사항(申告事項)(법(法)§27)

공개(公開)에 관한 사항(事項)(법(法)§33 내지 §39)

조사(調查)에 관한 사항(事項)(법(法)§40 내지 §42)

특히 준용사항(準用事項)중에서 “수출(輸出) 등의 금지” 조항(條項)(법(法)§21) 중 ①—②항만 준용(準用)하고 ③항을 준용(準用)하지 않은 것은 시(市)·도지정문화재(道指定文化財)

와 문화재자료(文化財資料)의 국외반출(國外搬出)은 국무회의(國務會議)를 거치지 않고 문화공보부장관(文化公報部長官)의 허가(許可)만으로 가능(可能)케 하여 허가절차(許可節次)를 간소화한 행정제도개선사항(行政制度改善事項)이다.

3. 문화재(文化財)의 국가관리강화(國家管理強化)

가. 국가관리(國家管理) 범위(範圍)의 확대(擴大)

개정(改正)전에는 국보(國寶)·보물(寶物)의 화재(火災)·도난(盜難)·훼손(毀損)·멸실(滅失)등의 예방(豫防) 기타 그 보존(保存)의 안전(安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認定)할 경우에 국가(國家)가 이를 직접 관리(管理)하거나 필요한 조치(措置)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를 국보(國寶), 보물(寶物)뿐 아니라 사적(史蹟)·명승(名勝)·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중요민속자료(重要民俗資料)까지 범위(範圍)를 확대(擴大)하였다(법(法)§17)

나. 문화재(文化財)의 매입규정(買入規定) 강화(強化)

국가지정문화재(國家指定文化財)의 소유자(所有者)가 그 문화재(文化財)를 매도(賣渡)하고자 하는 경우에 국가(國家)·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 또는 박물관(博物館)에서 매입(買入)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들에게 매도(賣渡)하도록 규정(規定)되어 있는 바(법(法)§26①), 구법(舊法)은 국가(國家)가 매입(買入)하여 보존(保存)·관리(管理)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認定)되는 문화재(文化財)를 매입(買入)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任意規定)을 두었으나(구법(舊法)§58의 6), 개정법(改正法)은 국가(國家)가 문화재(文化財)의 매입(買入)에 필요한 조치(措置)를 강구하도록 의무규정(義務規定)을 둬으로써, 가급적 국가지정문화재(國家指定文化財)는 국가(國家)가 매입(買入)하여 보존관리(保存管理)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다(법(法)§26②).

다. 국유문화재(國有文化財)에 관한 특례규정(特例規定) 강화(強化)(법(法)§50①)

구법(舊法)은 국유(國有)에 속하는 문화재(文化財)는 국유재산법(國有財產法)에 불구하고 문화공보부장관(文化公報部長官)이 이를 관리(管理) 또는 총괄(總括)한다고 규정하였으나, 개정법(改正法)에서는 국유재산법(國有財產法)뿐만 아니라 물품관리법(物品管理法)에 불구하고 문화공보부장관(文化公報部長官)이 관리(管理) 및 총괄(總括)하도록 함으로써 국유문화재(國有文化財)에 관한 특례규정(特例規定)을 강화(強化)하였다.

국유재산법(國有財產法)은 第6조(條)에서 국유재산(國有財產)에 관한 사무(事務)를 재무부장관(財務部長官)이 총괄(總括)하고 각 중앙관서(中央官署)의 장(長)이 그 소관(所管)에 속하는 국유재산(國有財產)을 관리(管理)하도록 규정(規定)하고 있으며 물품관리법(物品管理法)은 第15조(條)에서 물품관리(物品管理)에 관한 제도(制度)와 정책(政策)에 관한 사항(事項)을 재무부장관(財務部長官)이 관장(管掌)하고 조달청장(調達廳長)은 각 중앙관서(中央官署)의 장(長)이 관장(管掌)하는 물품관리(物品管理)의 조정(調整)과 집행운용(執行運用)의 총괄(總括)에 관한 사항(事項)을 관장(管掌)하며 물품관리(物品管理)의 적정(適正)을 기하기 위하여 각 중앙관서(中央官署)의 장(長)으로부터 물품(物品)의 관리상황(管理狀況)에 관한 통보(通

報)를 받는 등 조치(措置)를 취할 수 있게 규정(規定)하고 있으나, 효율적(效率的)인 문화재(文化財) 관리(管理)를 위하여는 국유재산법(國有財産法) 및 물품관리법(物品管理法)의 규정(規定)에 불구하고 문화공보부장관(財務部長官)이 관리(管理) 및 총괄(總括)하도록 하였다.

4. 민원 행정개선(民願行政改善)

가. 보유자인정서(所有者認定書) 반환제도(返還制度)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 보유자(所有者)가 사망(死亡)하였을 때에는 그 보유자(所有者) 인정서(認定書)를 상속자(相續者)가 반환(返還)하도록 하였던 것을 개선하여 반납(返納)받지 않고 그 인정서(認定書)를 후손(後孫)이 그대로 간직하게 함으로써 가문(家門)의 긍지(矜持)를 갖도록 하였다(법(法)§12⑦).

나. 허가사항완화(許可事項緩和)(법(法)§20)

(1) 종전에는 허가사항(許可事項)중 국보(國寶)·보물(寶物)을 촬영(撮影)·모조(模造)·모사(模寫)하거나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를 녹음(錄音)·촬영(撮影) 및 악보(樂譜)·대본(臺本) 등을 제작(製作)할 때에는 문화공보부장관(文化公報部長官)의 허가(許可)를 받도록 규정(規定)하였으나, 국보(國寶)·보물(寶物) 등 문화재(文化財)에 대한 단순한 촬영행위(撮影行爲)와 그 형태(形態)를 모사(模寫)하거나, 이를 모조(模造)하는 행위(行爲) 등은 당해문화재(當該文化財)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며 사실상 관광객(觀光客) 등이 문화재(文化財)앞에서 기념촬영(記念撮影)을 하거나 스캐치 등의 행위(行爲)를 일일이 문화공보부장관(文化公報部長官)의 사전허가(事前許可)를 받도록 하는 것은 법운용상(法運用上)에도 문제점이 있을 뿐 아니라 민원(民怨)의 대상(對象)이 되므로 허가사항(許可事項)에서 제외(除外)하였으며,

(2) 인간문화재(人間文化財)가 부르는 창(唱)의 녹음(錄音)·악보(樂譜)의 제작(製作) 또는 그 연희(演戲)의 대본(臺本) 등을 제작(製作)하는 행위(行爲)도 당해(當該) 문화재(文化財)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문화재(文化財)의 보급선양(普及宣揚)에 있어서도 이러한 사전허가제(事前許可制)는 오히려 장애요소(障害要素)가 될 뿐 실익(實益)이 없는 사항(事項)이므로 허가사항(許可事項)에서 제외(除外)하였다.

(3) 그러나 국보(國寶)·보물(寶物) 뿐만 아니라 사적(史蹟)으로 지정(指定)된 건조물(建造物)과 중요민속자료(重要民俗資料) 등에 대해서 영인(影印)과 조명기기(照明機器)를 이용(利用)한 촬영행위(撮影行爲)는 현행(現行)과 같이 허가(許可)를 받도록 규정(規定)하였다.

(4) 또한 국가지정문화재(國家指定文化財)의 소유자(所有者)·보유자(所有者)·관리자(管理者) 또는 관리단체(管理團體)가 아닌 第3자(者)가 문화재(文化財)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行爲)를 하는 때에는 허가(許可)를 받아야 한다는 명문(明文)의 규정(規定)이 없어 위반행위(違反行爲)를 한 경우에 벌칙(罰則)을 적용(適用)할 수 없었으므로 모든 행위자(行爲者)에 대해서 허가(許可)받도록 개정(改正)하였다.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명승(名勝)·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 안에서 동물(動物)· 식물(植物)· 광물(鑛物)을 포획(捕獲), 채취(採取)하거나 구역외(區域外) 반출행위(搬出行爲) 2. 대통령령(大統領令)이 정하는 보관장소(保管場所) 또는 연고관계(緣故關係)가 있는 장소(場所)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國家指定文化財)의 반출행위(搬出行爲) 3. 국가지정문화재(國家指定文化財)를 탁본(拓本) 또는 영인(影印)하거나 보존(保存)에 영향을 미치는 촬영행위(撮影行爲) 4. 국가지정문화재(國家指定文化財)의 현상변경행위(現狀變更行爲)와 보존(保存)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行爲) |
|---|

다. 문화재(文化財)의 국외반출허가제도(國外搬出許可制度)(법(法)§21)

(1) 국보(國寶)· 보물(寶物) 및 민속자료(民俗資料) 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재(文化財)는 국외전시(國外展示) 등 국제적(國際的) 문화교류(文化交流)를 목적(目的)으로 국무회의(國務會議)의 심의(審議)를 거쳐 허가(許可)를 받는 경우를 제외(除外)하고는 국외(國外)로 수출(輸出) 또는 반출(搬出)이 금지(禁止)되어 있으며, 반출기간(搬出期間)도 2年 이내로 제한(制限)하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事由)로 그 반입기간(搬入期間)을 연기(延期)하고자 할 때에는 다시 국무회의(國務會議)의 심의(審議)를 거쳐 그 기간(期間)을 연기(延期)할 수 있도록 규정(規定)하고 있었다.(구법(舊法)§20의2, §41의3)

(2) 그러나 문화재(文化財)의 국외반출기간연장(國外搬出期間延長)에 있어서 그 기간(期間)을 규정(規定)하고 있지 않아 기간연장허가시(期間延長許可時) 이론(異論)이 있었으므로 이를 구체적(具體的)으로 명시(明示)하여 그 연장기간(延長期間)을 2年の 범위(範圍)내에서 허가(許可)할 수 있도록 규정(規定)하였다.(법(法)§21②).

(3) 그리고 중요(重要)한 문화재(文化財)인 국가지정문화재(國家指定文化財)는 종전대로 국무회의(國務會議) 심의(審議)를 거쳐 대통령(大統領)의 재가(裁可)를 받아 국외반출(國外搬出)을 하도록 하고 문화재적(文化財的) 가치(價値)가 국가지정문화재(國家指定文化財)에 비하여 적은 시(市)· 도지정문화재(道指定文化財)와 문화재자료(文化財資料) 및 지정(指定)되지 아니한 문화재(文化財)중 동산(動産)에 속하는 문화재(文化財)에 대해서는 문화공보부장관(文化公報部長官)이 국외반출(國外搬出) 여부를 정하도록 하여 업무(業務)에 효율화(效率化)를 기하였다(법(法)§58①§76①).

라. 비문화재(非文化財) 확인제도(確認制度)

문화재(文化財)의 수출(輸出) 또는 반출(搬出)이 금지(禁止)된 문화재(文化財)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것을 국외(國外)로 반출(搬出)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문화재관리국장(文化財管理局長)의 비문화재(非文化財) 확인(確認)을 받도록 하는 규정(規定)이 대통령령(大統領令)에 규정(規定)되어 있었으나, 국민(國民)의 권리의무(權利義務)와 직접(直接) 관계(關係)되는 사항(事項)이므로 이를 법(法)에서 규정(規定)하고(법(法)§76②) 시행령(施行令)에서 시(市)· 도지사(道知事)의 비문화재확인(非文化財確認)을 받도록 위임(委任)하였다.

마. 신고사항완화(申告事項緩和)(법(法)§27)

국가지정문화재(國家指定文化財)를 탁본(拓本) 또는 영인(影印)하거나 그 보존(保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撮影)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許可)를 받아야 하며 완료(完了) 후에 신고(申告)하도록 하였으나 탁본(拓本) 등의 허가(許可)를 받고 행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申告)받을 필요도 없으며 국민(國民)에게 부담(負擔)을 주는 사항(事項)이므로 신고사항(申告事項)에서 제외(除外)시켰다.(구법(舊法)§24①8)

[참고 4] 신고사항(申告事項)(법(法)§27)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리자선임(管理者選任)·해임(解任) 신고(申告) 2. 국가지정문화재(國家指定文化財)를 매도예정신고(賣渡豫定申告)와 소유자변경신고(所有者變更申告) 3. 소유자(所有者)·보유자(保有者)·관리자(管理者)의 성명(姓名)·주소변경신고(住所變更申告) 4. 국가지정문화재(國家指定文化財)의 소유지(所有地)의 지명(地名)·지번(地番)·지목(地目)·지적(地積)등의 변경신고(變更申告) 5. 보관장소(保管場所) 변경신고(變更申告) 6. 국가지정문화재(國家指定文化財)가 멸실(滅失)·도난(盜難)·훼손신고(毀損申告) 7. 허가(許可)된 문화재(文化財)의 반출(搬出) 또는 반입신고(搬入申告) 8. 허가(許可)받고 현상변경(現狀變更) 기타 행위(行爲)에 착수(着手) 또는 완료신고(完了申告) 9. 명령(命令)을 받고 수리(修理)·시설(施設)의 설치(設置)·장애물 제거(障礙物除去) 또는 기타의 조치(措置)에 착수(着手) 또는 완료신고(完了申告) 10.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의 보유자사망신고(保有者死亡申告) |
|--|

바. 발견매장문화재(發見埋藏文化財)의 보상금(報償金) 지급기간(支給期間) 단축(短縮)(법(法)§48)

발견매장문화재(發見埋藏文化財)의 국고귀속제도(國庫歸屬制度)는 발견신고자(發見申告者)가 보상금(報償金)을 수령(受領)하자면 그 기간(期間)이 최소(最少) 100日 이상이 소요(所要)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매장문화재(埋藏文化財)의 발견신고(發見申告)가 접수(接受)되면 경찰서장(警察署長)은 유실물법(遺失物法)에 따라 14日동안 공고(公告)하고 공고(公告)한 날로부터 60日이 경과(經過)하여야만 보상금(報償金) 지급신청(支給申請)을 할 수 있도록 규정(規定)되어 있으며, 보상금(報償金) 지급(支給)에 있어서도 발견자(發見者)가 신청(申請)하면 군(郡)·도(道)를 경유(經由)하여 문화공보부(文化公報部)에 동(同) 신고서(申告書)가 접수(接受)되고 문화공보부(文化公報部)에서는 당해(當該) 문화재(文化財)의 보상가격결정(補償價格決定)을 위해 문화재위원(文化財委員)으로 구성(構成)되는 문화재평가심의회(文化財評價審議會)에서 감정(鑑定)·평가(評價)하고 동(同) 평가액(評價額)에 의거 보상금(報償金)을 지급(支給)하면 도(道)·군(郡)을 경유(經由)하여 본인(本人)에게 지급(支給)됨으로 상당(相當)한 기간(期間)이 소요(所要)되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매장문화재(埋藏文化財)는 소유자(所有者)가 없으므로 신고자(申告者)에게 보상금(報償金)을 빨리 지급(支給)할 수 있도록 이를 개선(改善)하여 공고(公告)후 경과기간(經過期間)을 60日에서 30日로 단축(短縮)하였다.

5. 행정제도개선(行政制度改善)

가. 지정(指定) 또는 인정(認定)의 효력발생시기(效力發生時期)

문화재(文化財)의 지정(指定) 또는 인정(認定)의 효력발생시기(效力發生時期)를 “관보(官報)의 고시(告示)가 있는 날로부터”라고 규정(規定)하였으나 처분(處分)의 상대방(相對方)에게 일방적인 행정행위(行政行爲)인 관보(官報)의 고시(告示)가 있는 날로부터 효력(效力)을 발생(發生)토록 한다는 것은 비민주적(非民主的)이므로 “당해(當該) 문화재(文化財)의 소유자(所有者)·보유자(保有者)·점유자(占有者) 또는 관리자(管理者)는 그 지정(指定) 또는 인정(認定)의 통지(通知)를 받은 날로부터, 기타의 자(者)는 관보(官報)에 고시(告示)한 날로부터” 효력(效力)을 발생(發生)토록 함으로써 행정(行政)의 민주화(民主化)를 도모하였다(법(法) §11).

나. 문화재수리제도(文化財修理制度)의 개선(改善)

(1) 국가지정문화재(國家指定文化財)의 수리(修理)는 원형보존(原形保存)의 관점(觀點)에서 실시되어야 함으로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에 등록(登錄)된 일정한 자격(資格)과 시설(施設)을 갖춘 자로 하여금 실시케 하고 실시과정(實施過程)에서 문화재(文化財)의 보호(保護)에 지장(支障)이 있을 때에는 그 수리(修理)를 정지(停止)시키거나 재수리(再修理)를 하도록 근거규정(根據規定)을 둬으로써 문화재(文化財)의 원형보존(原形保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다(법(法)§18).

(2) 문화재수리업자(文化財修理業者)의 등록(登錄) 및 재수리명령(再修理命令) 등은 대통령령(大統領令) 및 부령(部令)에 규정(規定)되어 있으나 국민(國民)의 권리(權利)·의무(義務)와 관계(關係)되는 사항(事項)이므로 법률(法律)로 규정(規定)하였다.

다.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의 보호(保護)·육성(育成)의 법적(法的) 근거(根據) 마련(법(法)§24)

(1) 종래는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의 보호(保護)·육성(育成)에 필요한 경비(經費)의 보조(補助)에 관한 규정(規定)만 있을 뿐(구법(舊法)§25①),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의 보호(保護)·육성(育成)에 관한 명문(明文)의 규정(規定)없이 행정관례(行政慣例)로 전수교육(傳授教育)을 실시하고 장학금(獎學金)을 지급(支給)하였다.

(2) 따라서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의 보호육성(保護育成)에 관한 법적(法的) 근거(根據)를 마련하여 보유자(保有者)로 하여금 그 보유기(保有技)·예능(藝能)의 전수교육(傳授教育)을 실시하게 하고 그 경비(經費)를 국가(國家)가 부담(負擔)할 수 있도록 하며, 전수교육(傳授教育)을 받은 자에게는 장학금(獎學金)을 지급(支給)할 수 있도록 명문(明文)으로 신설(新設)하여 규정(規定)하였다.

라. 보조금(補助金) 교부(交付)·사용절차(使用節次)

국가(國家)는 국가지정문화재(國家指定文化財)의 관리(管理)·보호(保護)·수리(修理) 또는 기록(記錄)의 작성(作成) 등을 위하여 경비(經費)의 전부(全部) 또는 일부(一部)를 보조(補

助)하도록 규정(規定)되어 있으며, 동(同) 보조금(補助金)은 관리단체(管理團體)가 그 문화재(文化財)를 관리(管理)함에 필요한 경상경비(經常經費)를 제외(除外)하고는 서울특별시장(特別市長)·직할시장(直轄市長) 또는 도지사(道知事)를 통하여 교부(交付)하고, 그 지시(指示)에 따라 관리(管理)·사용(使用)하도록 규정(規定)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외(例外)가 없었으나, 그 중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의 생계보조비(生計補助費) 등은 당해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가 개설(開設)한 은행구좌(銀行口座)에 직접(直接) 송금(送金)하는 등 직접(直接) 교부(交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문화공보부장관(文化公報部長官)이 필요하다고 인정(認定)하는 경우에는 직접교부(直接交付)·사용(使用)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但書條項)을 두었다(법(法)§28③).

마. 문화재매매업자(文化財賣買業者)의 허가제도(許可制度)

(1) 구법(舊法)은 문화재매매업(文化財賣買業)의 허가(許可)에 관한 근거(根據)만을 규정(規定)하였으며 문화재매매업자(文化財賣買業者)의 자격요건(資格要件), 결격사유(缺格事由), 준수사항(遵守事項)등은 대통령령(大統領令) 또는 부령(部令)으로 규정(規定)하고 있었으나, 이같은 사항(事項)은 국민(國民)의 권리(權利)·의무(義務)에 관한 사항(事項)이므로 법률(法律)에 명시(明示)하였다.(법(法)§61).

(2) 자격요건(資格要件)에 있어서 “문화재(文化財) 관계분야의 학문(學問)을 1년이상 전공(專攻)한 자(者)”라고 규정(規定)하였던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明示)하여 “전문대학(專門大學)이상의 대학(大學)(대학원(大學院)을 포함한다)에서 역사학(歷史學)·고고학(考古學)·인류학(人類學)·미술사학(美術史學) 또는 민속학(民俗學) 통계(系統)의 학문(學問)을 1년이상 전공(專攻)한 자(者)”로 하였다(법(法)§62).

(3) 문화재매매업자(文化財賣買業者)의 결격사유(缺格事由)에 있어서 “금지산자(禁治產者) 또는 한정치산자(限定治產者)”에 추가하여 “파산자(破產者)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者)”를 포함하였으며, 일반적(一般的)인 결격사유(缺格事由)로 허가(許可)가 취소(取消)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經過)되지 아니한 자(者)는 일정기간(一定期間)동안 문화재매매업(文化財賣買業)의 허가(許可)를 다시 받을 수 없도록 제한사항(制限事項)을 보완(補完)하였다(법(法)§63).

(4) 또한 문화재매매업자(文化財賣買業者)의 준수사항(遵守事項)을 규정(規定)하였으며(법(法)§64)

(5) 문화재매매업(文化財賣買業)의 허가(許可)에 관해서는 규정(規定)이 되어 있으나, 허가(許可)를 취소(取消)하거나 영업(營業)을 정지시킬 수 있는 규정(規定)이 없었으므로 법체계상(法體系上) 모순을 시정(是正)하기 위하여 개정법(改正法)에서는 “이 법(法)의 규정(規定)에 위반(違反)하여 벌금(罰金)이상의 형(刑)을 받은 때”와 “문화재매매업자(文化財賣買業者)의 준수사항(遵守事項)을 위반(違反)한 때”에는 허가(許可)를 취소(取消)하거나 영업(營業)의 정지를 명(命)할 수 있는 최소한(最小限)의 사유(事由)를 명시(明示)함으로써 문화재(文化財)의 건전(健全)한 유통질서(流通秩序)를 확립(確立)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法)§65).

바. 문화재사범(文化財事犯) 체포유공자(逮捕有功者) 보상금(報償金) 지급(支給)

구법(舊法)은 문화재사범(文化財事犯) 체포유공자(逮捕有功者)에 대한 보상금(報償金)을

300만(萬)원의 범위(範圍)내에서 지급(支給)할 수 있었으나 법률(法律)에 최고한도액(最高限度額)을 명시(明示)하여 신축성있게 운영(運營)할 수 없으므로 보상금액(報償金額)을 대통령령(大統領令)에서 정(定)하도록 하여 예산(豫算)의 범위(範圍)안에서 현실(現實)에 맞게 지급(支給)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재(文化財)의 도굴(盜掘) 등을 방지(防止)하도록 하였다(법(法)§67).

사 문화재보호단체(文化財保護團體)의 지원(支援)·육성(育成)

문화재보호단체(文化財保護團體)의 지원근거(支援根據)가 없었으나 개정법(改正法)에서는 문화재(文化財)의 보호(保護)·보존(保存)·보급(普及) 및 선양(宣揚)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認定)할 때에는 관련단체를 지원(支援)·육성(育成)할 수 있도록 관계조항(關係調項)을 신설하여 문화재보호단체(文化財保護團體)를 지원(支援)·육성(育成)할 법적근거(法的根據)를 마련하였다(법(法)§77).

6. 외국문화재(外國文化財)의 보호조항(保護條項) 신설(新設)(법(法)§78)

가. 이 규정(規定)을 신설(新設)한 이유(理由)는 인류(人類)의 문화유산(文化遺産)을 보존(保存)하고 국가간(國家間)의 우의(友誼)를 증진(增進)하기 위하여 대한민국(大韓民國)이 이미 가입(加入)한 “문화재(文化財) 보호(保護)에 관한 국제조약(國際條約)”에 이미 가입(加入)된 외국(外國)의 문화재(文化財)에 대하여 상호(相互) 보호(保護)에 관한 사항(事項)을 규정(規定)함으로써 우리 나라가 자국(自國)의 문화재(文化財)만이 아니라 인류공통(人類共通)의 문화유산(文化遺産)인 모든 나라의 문화재(文化財)를 보호(保護)한다는 문화의지(文化意志)를 국내외(國內外)에 선언(宣言)하고, 문화한국(文化韓國)의 면모를 국내외(國內外) 과시(誇示)하려는 것이며, 우리 나라가 가입(加入)하지 않은 문화재관계(文化財關係) 국제조약(國際條約)에 가입(加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나. 외국문화재(外國文化財)의 보호방법(保護方法)은 외국(外國)의 지정(指定)·보호대상문화재(保護對象文化財)를 국내(國內)에 반입(搬入)하고자 할 때에는 반출국(搬出國)에서 적법(適法)하게 반출(搬出)된 것에 한(限)하도록 하고, 불법(不法)으로 외국(外國)에서 반출(搬出)·반입(搬入)된 문화재(文化財)는 문화공보부장관(文化公報部長官)이 유치(留置)·보관(保管)하였다가 당해국(當該國)의 의사(意思)에 따라 반환(返還)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措置)를 강구하도록 규정(規定)하였다.

협약명(協約名)	채택일자 (採擇日字)	가입국수 (加入國數)
1. 전시문화재(戰時文化財) 보호협약(保護協約) 및 동(同)시행(施行) 세칙(細則)	1954. 5. 14	66
2. 전시문화재(戰時文化財) 보호(保護)에 관(關)한 의정서(議定書)	1954. 5. 14	56
3. 문화재(文化財) 불법반출입(不法搬出入) 및 소유권양도(所有權讓渡)의 금지(禁止)와 예방수단(豫防手段)에 관(關)한 협약(協約)	1970. 11. 14	42
4. 물새 서식지(棲息地)와 관련(關聯)된 습지(濕地)의 국제적(國際的) 중요성(重要性)에 관한 협약(協約)	1971. 2. 2	20
5. 세계문화(世界文化) 및 자연유산(自然遺産)의 보호(保護)에 관한 협약(協約)	1972. 11. 16	43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문화재관계(文化財關係) 국제조약(國際條約)중 1970年 11月 14일자(日字)로 체결한 “문화재(文化財) 불법반출입(不法搬出入) 및 소유권양도(所有權讓渡)의 금지(禁止)와 예방수단(豫防手段)에 관한 협약(協約)”에 가입(加入)하기 위하여 수락서를 유네스코 총장에게 1983年 2月 14일자(日字)로 기탁하였고, 동년(同年) 5月 14日로 발효(發效)되어 정식 가입(加入)한 바 있으며 동(同) 협약(協約)은 한 영토(領土)안에 존재(存在)하는 문화재(文化財)를 도난(盜難) 발굴(發掘) 및 불법반출(不法搬出)로부터 보호(保護)하고, 적법(適法)한 소유자(所有者)에게 반환(返還)토록 하는데 의의(意義)가 있다.

7. 기타 개정사항(改正事項)

가. 문화재위원회(文化財委員會) 운영(運營)(법(法)§3)

(1) 문화재(文化財)가 국가지정문화재(國家指定文化財)의 수준(水準)에는 못 미치나 시(市)·도지정문화재(道指定文化財) 또는 문화재자료(文化財資料)정도의 가치(價値)가 있을 때에는 이를 시(市)·도(道)에서 지정관리(指定管理)하도록 하는 문화공보부장관(文化公報部長官)의 권고사항(勸告事項)을 문화재위원회(文化財委員會)에서 심의(審議)하도록 하기 위하여 심의사항(審議事項)에 “시(市)·도지정문화재(道指定文化財) 또는 문화재자료(文化財資料)의 지정(指定)과 관리(管理)에 관한 문화재공보부장관(文化公報部長官)의 권고사항(勸告事項)”을 추가하였다.

(2) 문화재위원회(文化財委員會)의 조직(組織)과 운영(運營)을 위해 별도의 대통령령(大統領令)인 “문화재위원회규정(文化財委員會規定)”이 있으므로 법(法)에서는 분과위원회(分科委員會) 설치근거(設置根據)만 두고, 분과위원회(分科委員會)의 사무분장(事務分掌)은 대통령령(大統領令)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나. 문화재(文化財) 공개비용(公開費用) 부담(負擔) 개선(改善)

동산(動産)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國家指定文化財)의 공개(公開)에 있어서 국립박물관(國立博物館) 또는 기타의 장소(場所)에서 1年이내의 기간(期間)을 정하여 공개(公開)하거나 3年의 범위(範圍)안에서 기간(期間)을 연장(延長)하여 공개(公開)를 위한 출품명령(出品命令)을 하는 경우에는 그 출품(出品)에 소요(所要)되는 경비(經費)의 전액(全額)을 국가(國家)가 부담(負擔)하고 3月이내의 기간(期間)을 정한 공개조치명령(公開措置命令)이나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의 공개(公開) 또는 출품(出品)에 소요(所要)되는 경비(經費)는 그 전부(全部) 또는 일부(一部)를 국가(國家)에서 보조(補助)하도록 규정(規定)하고 있었다(구법(舊法)§34).

그러나 개정법(改正法)에서는 동산(動産)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國家指定文化財)와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의 출품(出品) 또는 공개(公開)에 소요(所要)되는 경비(經費)는 일률적으로 그 전액(全額)을 국가(國家)가 부담(負擔)하도록 하였으며, 다만 이들의 공개(公開) 또는 출품(出品)으로 인하여 수입(收入)이 있는 때에는 그 수입(收入)에 해당하는 전액(全額)을 국가부담금(國家負擔金)에서 공제(控除)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但書條項)을 신설(新設)하여 구체적으로 규정(規定)하였다(법(法)§37).

다. 발굴(發掘)의 제한(制限)

구법(舊法)은 연구(研究)의 목적(目的)으로 매장문화재(埋藏文化財)가 포장(包藏)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認定)되는 토지(土地)를 발굴(發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공보부장관(文化公報部長官)의 허가(許可)를 받아 발굴(發掘)할 수 있도록 긍정적(肯定的)으로 규정(規定)하였으나(구법(舊法)§43) 개정법(改正法)에서는 원칙적(原則的)으로 패총(貝塚)·고분(古墳) 기타 매장문화재(埋藏文化財)가 포장(包藏)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認定)되는 토지(土地) 및 해저(海底)를 발굴(發掘)할 수 없도록 발굴(發掘)을 제한(制限)하였으며, 단서조항(但書條項)을 신설(新設)하여 문화공보부장관(文化公報部長官)의 허가(許可)를 받아 연구(研究)의 목적(目的)으로 발굴(發掘)하는 경우나 건설공사(建設工事)(토목공사(土木工事)를 포함)를 위하여 부득이 발굴(發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발굴(發掘)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法)§44).

라. 토지(土地)의 수용(收用) 또는 사용(使用)

구법(舊法)은 지정문화재(指定文化財)의 보호구역(保護區域)에 있는 토지(土地)에 대한 수용(收用)과 사용(使用)에 관하여 토지수용법(土地收用法)을 준용(準用)하도록만 규정(規定)하고 있었으나(구법(舊法)§58조의8) 토지수용법(土地收用法) 준용이전(準用以前)의 토지(土地)의 수용(收用) 및 사용(使用)에 관한 아무런 규정(規定)이 없으므로, 문화공보부장관(文化公報部長官) 또는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장(長)은 국유(國有) 또는 공유(公有)의 지정문화재(指定文化財)의 보호구역(保護區域)안에 있는 토지(土地)·건물(建物)·입목(立木)·죽(竹) 기타 공작물(工作物)을 수용(收用)하거나 사용(使用)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根據規定)을 구체적으로 명시(明示)하였다(법(法)§75).

마. 신설조항(新設條項)

(1) 문화재보호구역지정(文化財保護區域指定) 해제(解除)

문화재(文化財)의 보호물(保護物) 또는 보호구역(保護區域)을 지정(指定)할 수 있는 근거(根據)는 있으나(법(法)§8), 해제조항(解除條項)이 없었으므로 해제(解除)할 수 있는 조항(條項)을 신설(新設)하였다(법(法)§12④).

(2) 행정명령(行政命令)의 대상(對象)

행정명령(行政命令)의 대상(對象)이 당해(當該) 국가지정문화재자체(國家指定文化財自體)에 대해서만 규정(規定)하고 있었으나(구법(舊法)§22) 그 보호물(保護物)과 보호구역(保護區域)도 행정명령(行政命令)의 대상(對象)에 포함하도록 하였다(법(法)§25).

[참고 6] 행정명령사항(行政命令事項)(법(法)§25)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지정문화재(國家指定文化財)의 관리상황(管理狀況)이 부적당하거나, 특히 필요한 경우에 일정한 행위(行爲)의 금지(禁止)·제한명령(制限命令) 2. 관리자(管理者)의 해임(解任)·변경명령(變更命令) 3. 국가지정문화재(國家指定文化財)의 수리(修理)·시설(施設)의 설치(設置)·장애물(障礙物)의 제거명령(除去命令) 4. 기타(其他) 필요한 조치명령(措置命令) |
|--|

(3) 기록(記錄)의 작성(作成)·보존(保存)

문화공보부장관(文化公報部長官)이 국가지정문화재(國家指定文化財)의 기록(記錄)을 작성(作成)·보존(保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기관(研究機關)이나 문화재(文化財)에 관한 전문적(專門的) 지식(知識)이 있는 자(者)로 하여금 국가지정문화재(國家指定文化財)의 기록(記錄)을 작성(作成)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明示) 규정(規定)하였다.(법(法)§19②).

(4) 다른 법률(法律)과의 관계(關係)

자연보호법(自然保護法)에 의하면 「공원구역(公園區域) 또는 공원보호구역(公園保護區域) 안에서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의 규정(規定)에 의하여 허가(許可) 또는 인가(認可)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관리청(公園管理廳)과 협의(協議)하여야 한다」고 한 규정(規定)에 상응하도록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에 명시(明示)한 것이며 자연공원법(自然公園法)의 적용(適用)을 받는 공원구역(公園區域)이나 공원보호구역(公園保護區域)안에서 대통령령(大統領令)이 정하는 면적(面積)이상의 지역(地域)을 대상(對象)으로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에 의한 사적(史蹟)·명승(名勝)·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 및 국가지정문화재(國家指定文化財)의 보호구역(保護區域)을 지정(指定)하거나 현상변경(現狀變更) 등의 허가행위(許可行爲)를 하는 경우에 사전협의(事前協議)함으로써 업무처리(業務處理)가 합리적(合理的)으로 이루어지게 하였다(법(法)§79).

바. 부칙(附則)의 정비(整備)

구법(舊法)에 규정(規定)되어 있던 구황실재산정리(舊皇室財産整理)와 잡종재산(雜種財産)의 처분(處分)등 국유재산법(國有財産法)의 규정(規定)을 적용(適用)할 수 있는 규정(規定)을 삭제정비(削除整備)하였으며, 다만 잡종재산처분(雜種財産處分)시 구황실(舊皇室)의 기부행위(寄附行爲)로 설립(設立)된 재단법인(財團法人) 숙명학원(淑明學園) 재단법인(財團法人) 진명학원(進明學園) 및 재단법인(財團法人) 양정학원(養正學園)과 이은(李垠) 및 그 배우자(配

偶者)에게 그 재산(財産)의 일부(一部)를 양여(讓與)할 수 있도록 규정(規定)되었던 사항(事項)을 이은(李垠)의 배우자(配偶者)외에는 특별(特別)히 규정(規定)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은(李垠)의 배우자(配偶者)만을 규정(規定)하고 삭제(削除)하였다.

8. 벌칙조항개정(罰則條項改正)

가. 문화재보호법상(文化財保護法上)의 벌칙규정(罰則規定)은 1970年 8月 10日 개정(改正)된 이래 이번 개정(改正)시까지 변동(變動)없이 적용되어 왔다. 벌금액(罰金額)에 있어서 1970년도(年度)의 100만(萬)원과 오늘의 100만(萬)원과는 그 가치(價値)에 있어서 큰 차이(差異)가 있을 뿐만 아니라, 타법률(他法律)의 벌칙(罰則)과 형평(衡平)을 기할 수 없었던 것이다.

나. 그러므로 벌금(罰金)을 현실적으로 인상(引上) 조정(調整)하고 벌칙(罰則)을 타법률(他法律)의 벌칙(罰則)과 형평(衡平)을 기할 수 있도록 개정(改正)하였으며 죄질(罪質)이 가벼운 문화재사범(文化財事犯)에 대해서도 자유형(自由刑)만을 과(科)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規定)은 자유형(自由刑)과 재산형(財産刑)을 선택적(選擇的)으로 과(科)할 수 있게 개정(改正)하였고 시(市)·도지정문화재(道指定文化財) 및 문화재자료(文化財資料)에 대해서는 벌칙(罰則)을 적용(適用)할 수 없는 조항(條項)이 있었으나 이를 보완(補完)하여 준용(準用)함으로써 벌칙(罰則)을 적용(適用)할 수 있게 하였다.

(1) 벌금인상조정(罰金引上調整)

㉠ 도굴(盜掘) 등의 죄(罪)(법(法)§82②-④)

문화재보호구역(文化財保護區域)이외의 장소(場所)에서 무허가(無許可) 발굴행위(發掘行爲) 등 : 10年이하의 징역(懲役) 또는 50만(萬)원이하의 벌금(罰金) → 1천만(千萬)원이하의 벌금(罰金)

㉡ 기타 일수죄(溢水罪)(법(法)§86)

10年이하의 징역(懲役) 또는 100만(萬)원이하의 벌금(罰金) → 10年이하의 징역(懲役) 또는 1천만(千萬)원이하의 벌금(罰金)

㉢ 과실범(過失犯)(법(法)§88①)

과실(過失)로 물을 넘겨 문화재(文化財)를 침해한 자(者) : 5만(萬)원이하의 벌금(罰金) → 100만(萬)원이하의 벌금(罰金)

㉣ 구역외(區域外) 무허가(無許可) 반출(搬出) 등의 죄(罪)(법(法)§89②)

그 문화재가 자기소유(自己所有)인 때 : 2年이하의 징역(懲役) 또는 10만(萬)원이하의 벌금(罰金) → 2年이하의 징역(懲役) 또는 200만(萬)원이하의 벌금(罰金)

㉤ 관리행위(管理行爲) 방해(妨害)등의 죄(罪)(법(法)§91)

2年이하의 징역(懲役) 또는 10만(萬)원이하의 벌금(罰金) → 2年이하의 징역(懲役) 또는 200만(萬)원이하의 벌금(罰金)

㉥ 공개명령(公開命令) 위반(違反)등의 벌(罰)(법(法)§92)

50만(萬)원이하의 벌금(罰金) → 100만(萬)원이하의 벌금(罰金)

㉦ 과태료(過怠料)(법(法)§93)

5만(萬)원이하의 벌금 → 50만(萬)원이하

(2) 타법률(他法律)과의 형평(衡平)유지

㉞ 가중죄(加重罪)(법(法)§83)

문화재(文化財)를 관리(管理) 또는 보호(保護)하는 자를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者) : 사형(死刑)· 무기(無期) 또는 3년이상의 징역(懲役) → 사형(死刑)· 무기(無期) 또는 5년이상의 징역(懲役)(형법(刑法)§250, §259)

㉟ 사적(史蹟) 등의 일수죄(溢水罪)(법(法)§85)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懲役) → 2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懲役)

㊱ 과실범(過失犯)(법(法)§88②)

중대한 과실(過失)로 인하여 일수죄(溢水罪)를 범한 자(者) : 6월이하의 징역(懲役) 또는 10만(萬)원이하의 벌금(罰金) → 3년이하의 금고(禁錮) 또는 300만(萬)원이하의 벌금(罰金)(과실범(過失犯)에 대하여는 징역형(懲役刑)을 과(科)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예(立法例)임)

㊲ 행정명령(行政命令) 위반(違反) 등의 죄(罪)(법(法)§90)

행정명령(行政命令) 위반행위(違反行爲)(①항) : 2년이하의 징역(懲役) 또는 10만(萬)원이하의 벌금(罰金) → 3년이하의 징역(懲役) 또는 300만(萬)원이하의 벌금(罰金)

무허가문화재(無許可文化財) 매매(賣買)· 영업행위(營業行爲)(②항) : 2년이상의 유기징역(有期懲役) → 5년이하의 징역(懲役)(형량(刑量)이 너무 과중하므로 조정(調整))

(3) 자유형(自由刑)과 재산형(財産刑)을 선택적(選擇的) 적용(適用)

㊳ 미수범(未遂犯) 등(법(法)§87)

무허가(無許可) 수출(輸出)· 도굴(盜掘) 등을 예비(豫備) 또는 음모(陰謀)한 자(者) : 2년이하의 징역(懲役) → 2년이하의 징역(懲役) 또는 200만(萬)원이하의 벌금(罰金)

㊴ 구역외(區域外) 무허가(無許可) 반출(搬出) 등의 죄(罪)(법(法)§89①)

5년이하의 징역(懲役) → 5년이하의 징역(懲役) 또는 500만(萬)원이하의 벌금(罰金)

(4) 시(市)· 도지정문화재(道指定文化財)와 문화재자료(文化財資料)에 벌칙적용(罰則適用)이 가능(可能)하도록 규정(規定)

㊵ 행정명령위반(行政命令違反) 등의 죄(罪)(법(法)§90)

㊶ 관리행위(管理行爲) 방해(妨害) 등의 죄(罪)(법(法)§91⑦-⑧)

㊷ 과태료(過怠料)(법(法)§93)

다. 벌칙조항중(罰則條項中) 개정법(改正法) 第91조(條)(관리행위(管理行爲) 방해(妨害)의 죄(罪)) 第9號에서 “고의(故意)로 第69條의 지정(規定)을 위반(違反)한 者”라고 “고의(故意)로”를 강조한 이유는 第69조(條)(문화재(文化財)의 등록(登錄))가 「동산문화재(動產文化財)의 등록제도(登錄制度)」를 규정(規定)한 것으로서 현행법상(現行法上) 50년이상의 동산문화재(動產文化財)는 문화공보부(文化公報部)에 등록(登錄)하여야 하며, 등록(登錄)하지 아니할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懲役)과 벌금(罰金)에 처하도록 규정(規定)하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선량(善良)한 국민(國民)을 「범법자(犯法者)」로 만드는 문제(問題)가 있으므로 문화재매매업(文化財賣買業)자나 다량소장가(多量所藏家)등 문화재(文化財)를 전문적(專門的)으로 취급하는 자(者)가 고의(故意)로 등록(登錄)하지 않을 때에는 처벌(處罰)하도록 하고 법(法)의 무지(無知)나 과실(過失)로 인한 일반국민(一般國民)의 등록업무(登錄業務) 불이행(不履行)에 대해서는 처벌대상(處罰對象)에서 제외(除外)시키려는데 그 목적(目的)이 있다.

9. 불필요(不必要) 또는 불합리(不合理) 조항(條項) 삭제(削除)

가. 지정(指定) 또는 인정(認定)의 통지방법(通知方法)을 구체적으로 명시(明示)하여 규정(規定)하였으나, 별도의 예외규정(例外規定)은 필요없으므로 삭제(削除)하였다(구법(舊法)§12③).

나. 지정서(指定書) 또는 인정서(認定書)의 기재사항(記載事項)은 법(法)의 규정(規定)이 없어도 부령(部令)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削除)하였다(구법(舊法)§12의2③).

다. 개정(改正)전에는 지정문화재(指定文化財)를 다시 등급(等級)을 붙이거나 구분(區分)할 수 있도록 되었으나, 지정문화재(指定文化財)를 다시 그 가치(價値)에 따라 등급(等級)을 나누기는 곤란하며 또한 별도로 구분(區分)할 필요도 없어 사문화(死文化)되었던 조문(條文)이므로 삭제(削除)하였다(구법(舊法)§15).

라.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의 보유자(保有者)는 당해(當該) 문화재(文化財)를 선량(善良)한 관리자(管理者)의 주의(注意)로서 이를 관리(管理)·보호(保護)하여야 한다고 규정(規定)하고 있었으나, 보유자(保有者)에게 그 기(技)·예능(藝能)을 연마하고 전승(傳承)하는 의무(義務)를 갖게 하는 것은 별도의 규정(規定)이 없어도 가능(可能)하며 또한 기(技)·예능보유자(藝能保有者) 자신(自信)의 일신전속적(一身轉屬的)인 기(技)·예능(藝能)에 대하여 선량(善良)한 관리자(管理者)의 주의의무(注意義務)를 부과(賦課)하는 것은 법이론상(法理論上) 모순됨으로 “보유자(保有者)”의 관리의무(管理義務)를 규정(規定)에서 삭제(削除)하였다(법(法)§15).

마. 국가지정문화재(國家指定文化財)의 화재예방조치(火災豫防措置)등을 위하여 국가(國家)가 직접(直接) 관리(管理) 또는 조치(措置)하거나, 재수리명령(再修理命令), 행정명령(行政命令)의 이행(履行)으로 인하여 손실(損失)을 받은 자(者)에 대하여 국가(國家)가 그 손실(損失)을 보상(補償)하는 제도(制度)가 있는 바, 구법(舊法)은 그 보상액(補償額)에 불복(不服)이 있는 자(者)는 그 보상결정(補償決定)의 통지(通知)를 받은 날로부터 3月 이내에 법원(法院)에 출소(出訴)할 수 있도록 규정(規定)하였으나, 별도의 명문규정(明文規定)이 없더라도 행정청(行政廳)의 위법(違法) 또는 부당(不當)한 처분(處分)으로 인(因)하여 권리(權利) 또는 이익(利益)을 침해(侵害)당한 자(者)는 소원(訴願) 등의 절차를 거쳐 법원(法院)에 출소(出訴)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규정(規定)을 삭제(削除)하였다(구법(舊法)§27②). 그리고 동산(動産)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國家指定文化財)를 행정명령(行政命令)에 의하여 출품(出品)하거나 공개(公開)하는 중에 문화재(文化財)가 멸실(滅失) 또는 훼손(毀損)된 때에는 국가(國家)는 그 소유자(所有者)에게 손실(損失)을 보상(補償)하여야 하며 그 보상액(補償額)에 불복(不服)이 있는 경우에도 구법(舊法)§27②를 준용(準用)하도록 규정(規定)하고 있었으나 역시 삭제(削除)하였다(구법(舊法)§35②). 또한 문화공보부장관(文化公報部長官)이 소속공무원(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국가지정문화재(國家指定文化財)의 현상(現狀)·관리(管理)·수리(修理) 기타 환경보전상황(環境保全狀況)에 관한 조사행위(調查行爲)를 하게 함으로써 그 조사행위(調查行爲)로 인하여 손실(損失)을 받은 자(者)에게는 국가(國家)에서 그 손실(損失)을 보상(補償)하도록 규정(規定)되어 있는 바, 그 보상액(補償額)에 불복(不服)이 있는 경우

에 구법(舊法)§27②를 준용(準用)하도록 한 조문(條文)을 삭제(削除)하였다(구법(舊法)§38④, 법(法)§41⑤).

바. 구법(舊法)은 第37조(條)(보고징수(報告徵收))에 문화공보부장관(文化公報部長官)은 국가지정문화재(國家指定文化財)의 소유자(所有者)·보유자(保有者) 또는 관리자(管理者)나 관리단체(管理團體)로부터 당해문화재(當該文化財)의 현상(現狀)·관리(管理)·수리(修理)·환경보전상황(環境保全狀況) 기타 필요한 사항(事項)에 관하여 보고(報告)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規定)되어 있고, 第39조(條)(조사요청(調查要請))에 국가지정문화재(國家指定文化財)가 국가(國家) 또는 지방공공단체(地方公共團體)의 소유(所有) 또는 관리(管理)에 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문화공보부장관(文化公報部長官)은 당해기관(當該機關)의 장(長)에게 필요한 조사(調查)를 요청(要請)할 수 있다고 규정(規定)되어 있었으나, 보고징수(報告徵收)를 받을 수 있으면 조사요청근거(調查要請根據)는 불필요하므로 조사요청(調查要請) 조항(條項)을 삭제(削除)하였다(구법(舊法)§39①).

사. 「지정문화재(指定文化財)이외의 문화재(文化財)」 삭제(削除)

구법(舊法)은 “指定文化財이외의 文化財”에 관한 장(章)(第3장(章)의2)을 별도로 설치(設置)하여 5개조항(個條項)(구법(舊法)§41의2 내지6)으로 현상변경(現狀變更) 등의 제한(制限), 수출(輸出) 등의 금지(禁止), 기술적(技術的) 지도(指導), 기록작성(記錄作成) 및 문화재(文化財)의 등록사항(登錄事項)을 규정(規定)하였다. 그러나 지정문화재(指定文化財)를 국가지정문화재(國家指定文化財) 시(市)·도지정문화재(道指定文化財), 문화재자료(文化財資料)로 구분(區分)하여 지정(指定)·관리(管理)하게 됨에 따라 “지정문화재(指定文化財) 이외의 문화재(文化財)”가 삭제(削除)되었으며 이중 가치(價値)가 있는 것을 시(市)·도지사(道知事)가 지정(指定)·관리(管理)하게 되고, 현상변경(現狀變更) 등에 관하여는 시(市)·도(度)의 조례(條例)로 자체적(自體的)으로 정(定)하도록 하였다. 다만 수출(輸出)등의 금지(禁止)와 문화재(文化財)의 등록(登錄)에 관하여는 그 제도(制度)의 존속이 필요하므로 개정법(改正法)에서 개별적으로 규정(規定)하였다.

아. 국유문화재(國有文化財)에 대한 “적용상(適用上)의 특례(特例)”조항(條項)은 각(各) 조항별(條項別)로 특례규정(特例規定)이 있을 뿐아니라 별도로 규정(規定)할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削除)하였다(구법(舊法)§49).

자. 문화공보부장관(文化公報部長官)이 관계기관(關係機關)의 장(長) 및 재무부장관(財務部長官)과 협의(協議)하여 국유문화재(國有文化財)의 관리청(管理廳)을 정한 경우에 그 관리청(管理廳)이 국가지정문화재(國家指定文化財) 또는 가지정문화재(假指定文化財) 또는 가지정문화재(假指定文化財)를 취득(取得)하였을 때와 이관(移管)을 받거나 그 관리청(管理廳)을 변경(變更)하였을 때에는 문화공보부장관(文化公報部長官)에게 보고(報告)하도록 규정(規定)되었으나, 이는 별도의 규정(規定)이 없어도 신고(申告)하도록 규정(規定)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削除)하였다(구법(舊法)§53②).

여기에서 주의(注意)하여야 할 사항(事項)은 개정법(改正法) 第53조(條)(처분(處分)의 제한)에서 “국가지정문화재(國家指定文化財)의 관리청(管理廳)이 그 관리(管理)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國家指定文化財) 또는 가지정문화재(假指定文化財)에 관하여 第20條 각호(各號)

에 정하여진 행위 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재공보부장관(文化公報部長官)의 동의(同意)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規定)하고 있는 바, 이는 구법(舊法)에서 규정(規定)된 “지정(指定) 또는 가지정문화재(假指定文化財)를 대부(貸付), 교환(交換) 기타(其他) 처분(處分)을 하는 행위(行爲)”에 대해서도 동의(同意)를 얻어야 한다는 의미(意味)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點)이다.

차. 비상시(非常時) 문화재보호(文化財保護)를 위하여 문화공보부장관(文化公報部長官)은 안전(安全)한 지역(地域)으로 이동(移動)·매몰(埋沒) 등의 조치(措置) 또는 명령(命令)을 할 수 있는 바, 이같은 조치(措置) 또는 명령(命令)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고시(告示)”로써 하여야 한다고 규정(規定)하고 있으나, 전시(戰時) 등의 경우에는 고시(告示)를 통하여 조치(措置) 또는 명령(命令)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삭제(削除)하였다(구법(舊法)§58의3⑤).

카. 국가지정문화재(國家指定文化財)에 대한 벌칙규정(罰則規定)을 지방문화재(地方文化財)에 준용(準用)하도록 하는 준용규정(準用規定)이 있었으나 개정법(改正法)에는 지정문화재(指定文化財)의 개념(概念)속에 국가지정문화재(國家指定文化財), 시(市)·도지정문화재(道指定文化財) 및 문화재자료(文化財資料)를 모두 포함시켜 규정(規定)하였으므로 준용규정(準用規定)이 불필요하며 삭제(削除)하였다(구법(舊法)§72의2).

Ⅲ. 문화재보호법시행령(文化財保護法施行令) 개정(改正)

(83. 8. 3 공포(公布) 대통령령(大統領令) 第1184號)

순서(順序)

1. 문화재수리업자(文化財修理業者) 등록제도(登錄制度) 개선(改善)
2.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의 보호(保護)·육성제도(育成制度) 개선(改善)
3. 신고기간(申告期間)의 연장완화(緩和)
4. 매장문화재(埋藏文化財) 발견신고접수기관(發見申告接受機關) 확대
5. 발굴조사보고서(發掘調査報告書) 작성기한(作成期限) 명시(明示)
6. 국유문화재수입금(國有文化財收入金) 사용범위(使用範圍) 확대
7. 문화재매매업자(文化財賣買業者)의 범위변경(範圍變更)
8. 문화재사범체포유공자(文化財事犯逮捕有功者) 지급보상금(支給報償金) 인상(引上)
9. 권한(權限)의 위임(委任)·확대(擴大)
10. 기타 개정사항(改正事項)
 - 가. 지정(指定) 등의 기준결정(基準決定)
 - 나. 지정(指定) 등의 고시내용(告示內容)
 - 다. 손실보상신청(損失補償申請)
 - 라. 공개사항보고(公開事項報告)
 - 마. 시(市)·도지정문화재(道指定文化財) 지정(指定) 등의 보고(報告)
11. 자연공원법(自然公園法)과의 관계(關係)
12. 시행규칙(施行規則)에 위임(委任)하여 규정(規定)한 사항(事項)
13. 불필요(不必要) 삭제사항(削除事項)

1. 문화재수리업자(文化財修理業者) 등록제도(登錄制度) 개선(改善)

가. 문화재(文化財)의 수리(修理)에 관하여 규정(規定)하였던 「지정문화재수리기술자(指定文化財修理技術者)·기능자(技能者) 및 수리업자등록규정(修理業者登錄規定)(1970. 1. 1 부령(部令) 第22號)」을 폐지하고 이를 개선(改善)하여 시행령(施行令)과 시행규칙(施行規則)에 통합(統合)하여 규정(規定)하였다.

시행령(施行令)에서는 ①문화재수리(文化財修理)의 정의(定義)·방법(方法) ②수리기술자(修理技術者) 및 수리기능자(修理技能者)의 정의(定義)·종류(種類)·자격(資格)·시험(試驗)과 등록(登錄)과 취소(取消) ③기술교육실시(技術教育實施) 근거(根據) ④문화재수리업자(文化財修理業者)의 종류(種類)·등록(登錄) 및 취소사항(取消事項)을 규정(規定)하였으며 (령(令)§7~§14), 시행규칙(施行規則)에서는 ①수리기술자(修理技術者) 및 수리기능자(修理技能者)의 시험방법(試驗方法)과 등록방법(登錄方法) ②수리기술자(修理技術者)의 보수교육(補修教育) ③수리업자(修理業者)의 등록(登錄)·방법(方法) ④기타(其他) 응시원서(應試願書), 등록신청서(登錄申請書), 등록증(登錄證)의 서식(書式) 등을 규정(規定)하였다(규칙(規則)§8~§14).

나. 문화재수리기술자(文化財修理技術者)가 되려면 전에는 먼저 등록신청서(登錄申請書)와 구비서류(具備書類)를 제출(提出)하여 서류심사(書類審査) 및 필기시험(筆記試驗)후 합격자(合格者)를 발표(發表)함으로써 등록(登錄)을 받았으나, 이를 개선(改善)하여 먼저 시험(試驗)에 합격(合格)하여 자격(資格)을 취득(取得)하여 등록(登錄)을 받도록 하였다(령(令)§8 ①). 수리기술자(修理技術者)의 자격(資格)을 학력(學歷)뿐만 아니라 연구기관(研究機關)등에서 연구경력(研究經歷)이 있는 자(者)도 인정하도록 하였으며, 대학졸업(大學卒業)후 실무경력(實務經歷)을 최소 1年에서 2年으로 강화(強化)하고 국가기술자격법(國家技術資格法)의 규정(規定)에 의한 당해 분야의 기술자격(技術資格)을 취득한 자(者)도 포함시켜 등록시험(登錄試驗)에 응시할 수 있게 하였다(령(令)§8③).

다. 문화재수리기술자(文化財修理技術者)의 기술(技術) 및 자질향상(資質向上)을 위하여 기술교육(技術教育)을 실시(實施)할 수 있도록 규정(規定)하였다.(령(令)§7④). 참고로 건설업법(建設業法)은 건설기술자(建設技術者)의 보수교육사항(補修教育事項)을 규정(規定)하고 있다(건설업법(建設業法)§17의2).

라. 수리기술자등록(修理技術者登錄)의 취소규정(取消規定)을 보완(補完)하여 타인(他人)에게 수리기술자등록(修理技術者登錄)증을 대여(貸與)하거나 2이상의 문화재수리업체(文化財修理業體)에 중복하여 취업(就業)하는 때에도 등록(登錄)을 취소(取消)하도록 하였다(령(令)§9).

마. 수리기술자(修理技術者)의 경우에 있어서도 실기시험(實技試驗)과 서류심사(書類審査)를 거쳐 등록(登錄)하도록 하였으며, 연구경력(研究經歷)이 있는 자(者)와 국가기술자격법(國家技術資格法)의 규정(規定)에 의한 당해(當該) 분야(分野)의 기술자격(技術資格)을 취득(取得)한 자도 등록시험(登錄試驗)에 응시(應試)할 수 있게 추가(追加)하였다(령(令)§10③).

바. 문화재수리업자(文化財修理業者)의 자격(資格)을 건설업법(建設業法) 第5조(條) 및 동시행령(同施行令) 第5조(條)의 규정(規定)에 의한 일반공사업(一般工事業)의 면허를 받은 자로 일률적으로 규정(規定)하였으나 문화재수리업자(文化財修理業者)의 종류(種類)에 따라 다르므로 이를 개선(改善)하여 보수단청업자, 실측·설계업자 및 조경업자에 대해서만 건설업법(建設業法)의 면허 또는 건축사업(建築事業)의 등록(登録)을 한 자로 하였으며, 조각, 표구, 철공, 도금, 모사, 보존과학수리업자(保存科學修理業者)는 제외(除外)하였다.(령(令)§13 ①).

사. 또한 문화재수리업자(文化財修理業者)의 등록유효기간(登録有效期間)을 1年으로 하였기 때문에 매년(每年) 반복하여 신규등록(新規登録)을 받음으로써 많은 문제점(問題點)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등록유효기간(登録有效期間)을 폐지하여 한번 등록(登録)된 문화재수리업자(文化財修理業者)는 등록사항(登録事項)에 취소사유(取消事由)가 발생(發生)하기 전까지는 계속 유효(有效)하게 하고, 기등록(既登録)된 수리업자(修理業者)를 제외(除外)한 신규등록(新規登録)은 매년(每年) 받도록 규정(規定)하였다(령(令)§13⑤).

2. 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제도 개선 (重要無形文化財 保護·育成制度 改善)

가. 문화공보부장관(文化公報部長官)은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의 전수교육(傳授教育) 실시상황(實施狀況)을 지도(指導)·감독(監督)할 수 있으며, 전수교육생(傳授教育生)을 심사(審査)하여 이수증(履修證)을 교부(交付)하도록 하였다(령(令)§18).

나. 전수교육(傳授教育)을 돕기 위하여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후보(重要無形文化財保有者候補), 전수교육조교(傳授教育助教) 또는 악사(樂士)를 선정(選定)하고, 이들의 전수교육(傳授教育)을 보조(補助)하는데 소요(所要)되는 경비(經費)를 지급(支給)하도록 하였다(령(令)§19). 참고로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후보(重要無形文化財保有者候補)는 그 분류(分類)에 있어서 보유자(保有者)의 개념(概念)에 포함시킬 수도 없으므로, 전수교육보조자(傳授教育補助者)의 개념(概念)에 포함시켜, 보조금(補助金)을 지급(支給)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전수장학생(傳授獎學生)을 선정(選定)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수장학생(傳授獎學生)이 전수교육(傳授教育)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와 전수실적(傳授實績)이 불량할 때에는 보고(報告)하고 장학금지급(獎學金支給)을 중지(中止)하도록 하였다.(령(令)§20).

3. 신고기간(申告期間) 연장완화(延長緩和)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의 규정(規定)에 의한 신고의무이행(申告義務履行)에 있어서 신고사유(申告事由)가 발생한 날로부터 7日 이내에 하도록 하였으나, 기간(期間)이 너무 짧아 부득이한 사유(事由)로 신고(申告)를 못한 경우나 지연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15日 이내로 신고기간(申告期間)을 연장(延長)함으로써 신고의무(申告義務)를 완화(緩和)하여 국민(國民)의 불편(不便)을 덜어주도록 민원행정(民願行政)을 개선(改善)하였다(령(令)§21).

4. 매장문화재(埋藏文化財) 발견신고기관(發見申告機關) 확대(擴大)

발견매장문화재(發見埋藏文化財) 신고접수기관(申告接受機關)의 최하기관(最下機關)이 시장(市長), 군수(郡守), 구청장(區廳長)까지 였으나 지방의 읍(邑)·면주민(面住民)이 신고(申告)할 경우 군청(郡廳)까지 가서 신고(申告)하여야 하는 불편(不便)이 있었으므로 읍(邑)·면(面)·동장(洞長)과 경찰관서(警察官署)의 장(長)까지 확대(擴大)함으로써 신고자(申告者)의 편의(便宜)를 도모하고 민원(民願)을 해소하였다(령(令)§29②).

또한, 발견매장문화재(發見埋藏文化財)의 신속한 처리(處理) 및 보상금(報償金) 지급기간(支給期間)을 단축하기 위하여 발견신고(發見申告)를 받은 기관은 지체없이 문화공보부(文化公報部)에 신고(申告)하도록 규정(規定)하였다(령(令)§29③).

5. 발굴조사보고서(發掘調査報告書) 작성(作成)

문화공보부장관(文化公報部長官)으로부터 발굴허가(發掘許可)를 받아 발굴(發掘)을 완료(完了)한 자는 발굴조사보고서(發掘調査報告書)를 작성(作成)하여 신고(申告)하여야 하나, 발굴(發掘)후 장기간 보고서(報告書) 작성(作成)이 지연되는 사례(事例)가 많음으로 2년이내에 발굴조사보고서(發掘調査報告書)를 간행하여 문화공보부장관(文化公報部長官)에게 제출(提出)하도록 하였다(령(令)§31).

6. 국유문화재(國有文化財) 수입금(收入金) 사용범위(使用範圍) 확대(擴大)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등이 국유문화재(國有文化財)의 관리(管理)로 얻게 되는 수입(收入)은 당해 문화재(文化財)의 관리(管理)에만 사용(使用)하도록 하였으나, 당해 문화재(文化財)의 관리(管理)에 사용(使用)하고도 남는 경우, 앞으로는 문화공보부장관(文化公報部長官)의 승인(承認)을 얻어서 다른 문화재(文化財)의 수리(修理)등에도 사용(使用)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但書條項)을 신설(新設)하였다(령(令)§34).

7. 문화재매매업자(文化財賣買業者)의 범위(範圍)

문화재매매업자(文化財賣買業者)의 범위(範圍)는 동산(動産)에 속하는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나 유형(有形)의 민속자료(民俗資料)로서 1910年 이전에 제작(製作)된 것(문서류(文書類)의 경우에는 1945年 8月 15日 이전에 작성(作成)된 것)이었다. 그러나 문화재(文化財)의 가치(價値)는 시대(時代)의 변천(變遷)에 따라 변화(變化)되는 것으로서 1962年 법제정(法制定)당시와 20여년(餘年)이 지난 오늘날과는 같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일반동산문화재(一般動産文化財)의 등록범위(登錄範圍)는 50年이상으로 규정(規定)하고 있으므로 문화재매매업자(文化財賣買業者)가 취급하는 문화재(文化財)의 범위(範圍)와 일치(一致)하지 않았다. 따라서 문화재매매업자(文化財賣買業者)의 범위(範圍)를 일반동산문화재(一般動産文化財)의 범위(範圍)와 같게 하여 제작(製作)된 지 50年이상인 것으로 규정(規定)하였다(령(令)§37).

8. 문화재사범(文化財事犯) 체포유공자(逮捕有功者) 보상금인상(報償金引上)(령

(令)§41)

문화재사범(文化財事犯) 제보자(提報者)와 체포유공자(逮捕有功者)에 대한 보상금(報償金)을 최고 300만(萬)원에서 1천만(千萬)원으로 인상조정(引上調整)하여 현실(現實)에 맞게 지급(支給)함으로써 효율적(效率的)으로 문화재(文化財)의 도굴(盜掘)등을 방지(防止)하도록 하였다. 즉 문화재사범(文化財事犯) 제보자(提報者) 및 체포자(逮捕者)에 대한 보상금(報償金)은 1973年 2月 5日 개정(改正)된 이후 인상되지 않아 그동안의 화폐가치변동(貨幣價值變動)과 물가상승(物價上昇) 등을 감안할 때 현실(現實)에 맞지 않았으므로 보상금(報償金)을 인상하여 문화재(文化財)의 도난(盜難)·도굴(盜掘)·해외밀반출(海外密搬出)을 사전에 방지(防止)하고 국민(國民)의 신고의욕(申告意欲)을 고취하도록 하였다.

○보상금(報償金) 인상조정내용(引上調整內容)

등급 (等級)	개정전(改正前)	개정후(改正後)
1.	2백만(百萬)원이상3백만(百萬)원미만	7백만(百萬)원이상1천만(千萬)원미만
2.	1백만(百萬)원이상2백만(百萬)원미만	5백만(百萬)원이상7백만(百萬)원미만
3.	50만(萬)원이상1백만(百萬)원미만	2백만(百萬)원이상5백만(百萬)원미만
4.	10만(萬)원이상50만(萬)원미만	1백만(百萬)원이상2백만(百萬)원미만
5.	5만(萬)원이상10만(萬)원미만	50만(萬)원이상1백만(百萬)원미만
6.	5천(千)원이상5만(萬)원미만	1만(萬)원이상50만(萬)원미만

9. 권한(權限)의 위임(委任) 확대(擴大)(령(令)§43)

행정권한(行政權限)을 대폭 문화재관리국장(文化財管理局長)과 시(市)·도지사(道知事)에게 위임(委任)하여 행정능률(行政能率)을 향상(向上)시키고 민원인(民願人)의 편의(便宜)를 도모하는 행정체제(行政體制)를 더욱 강화(強化)하였으며 행정상(行政上)의 권한(權限)과 책임(責任)을 분명히 함으로써 문화재(文化財)의 보호(保護)·관리업무(管理業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다.

위임(委任)된 사항(事項)은 다음과 같은 사항(事項)들이다

- 국가지정문화재(國家指定文化財)의 지정(指定)과 관계되는 부수적인 업무(業務)
- 국가지정문화재(國家指定文化財)의 관리(管理)·보호(保護)·공개(公開)에 관한 일반적인 업무(業務)
- 국유(國有)에 속하는 문화재(文化財)의 일반적인 관리업무(管理業務)
- 국가지정문화재(國家指定文化財)의 관리(管理)·보호(保護)에 필요한 보조금(補助金) 등 지원사항(支援事項)

[참고 7] 권한(權限)의 위임(委任) 현황(現況)

구분(區分)	위임사항(委任事項) 수(數)			계(計)
	문화재관리국장	시·도지사	공통	
개구분(區分)정전(改正前)	23	3	1	27
개정후(改正後)	존치(存置):20 신규(新規):20 계(計):40	존치(存置):2 신규(新規):2 계(計):4	변경(變更):1 계(計):1	존치(存置):20 신규(新規):20 계(計):40

위임해제(委任解除): 4 (문화재관리국장(文化財管理局長):3 시도지사(市道知事):1)

가. 기존위임현황(既存委任現況)(22건(件))

(1) 문화재관리국장(文化財管理局長)에게 위임(委任)(20건(件))

- 국가에 의한 관리 등(법(法)§17)
 - 기록의 작성, 보호(법(法)§19)
 - 허가사항(법(法)§20)
 - 허가취소(법(法)§22)
 - 관리등의 위탁 또는 기술지도(법(法)§23)
 - 매도제한(법(法)§26②)
 - 신고사항(법(法)§27)
 - 부동산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법(法)§34)
 - 동산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법(法)§35)
 - 관리상황의 보고(법(法)§40)
 - 직권에 의한 조사(법(法)§41)
 - 발견신고(법(法)§43)
 - 발굴의 제한(법(法)§44)
 - 국가에 의한 발굴(법(法)§45)
 - 처리방법(법(法)§46)
 - 경찰서장 등의 매장문화재의 처리방법(법(法)§47)
 - 국가귀속과 보상금(법(法)§48)
 - 보상금(법(法)§67)
 - 문화재의 수리 등 기술자의 양성(법(法)§73)
 - 건설공사시의 문화재 보호(법(法)§74)
- (2) 시(市)·도지사(道知事)에게 위임(委任)(2건(件))
- 매매 등 영업의 허가(법(法)§61)
 - 문화재의 등록(법(法)§69)

나. 변경위임(變更委任): 관람료의 징수(법(法)§39)

수입기관	개정 전	개정 후
문화재 관리국장	제36조: 국가가 직접관리하는 문화재에 대한 것에 한한다.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징수관리를 위한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지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의 금액결정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재에 대한 것과 동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취청
시·도지사	제36조: 국가가 직접관리하는 문화재에 외의 문화재에 대한 것에 한한다.	제39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의 금액 결정중 국가가 직접관리하지 아니하는 국가지정 문화재에 한한다.

다. 신규위임현황(新規委任現況)(22건(件))

(1) 문화재관리국장(文化財管理局長)에게 위임(委任)(20건(件))

위임업무명	위 임 이 유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법§8, 법§12④)	국가지정문화재를 지정한 후 문화재의 보호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 지정하는 부수적인 업무이므로 위임함
관리방법의 지시(법§14)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지시는 문화재관리국장의 일반업무임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법§16)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등의 관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등”을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사항을 위임함
문화재의 수리 또는 재수리의 명령(법§18③)	수리가 문화재의 보호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때 그 수리를 정지 또는 재수리를 명할 수 있음은 전문적인 사항이며 문화재관리국장의 일반업무임
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법§24)	중요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전수교육을 실시하고 장학금 지급 등은 문화재관리국장의 일반업무임
행정명령(법§25)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보호상 필요한 행정명령은 허가사항, 신고사항 등과 같이 문화재관리국장의 일반업무임
보조금(법§28)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보호·수리등에 관한 경비의 보조는 문화재관리국장의 고유업무임
보조금의 반환등(법§29)	법 제28조(보조금)조항의 위임과 유사함
중요무형문화재공개(법§36)	부동산 및 동산문화재의 공개사항은 문화재관리국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중요무형문화재공개도 위임함
지정을 위한 조사등(법§42)	문화재지정에 따른 조사사항은 문화재관리국장의 고유업무임.
관리 및 총괄청(법§50)	국유문화재의 관리 및 총괄과 관리청 지정업무를 문화재관리국장에게 위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하도록함.
절차 및 방법의 특례(법§50)	관리청이 따로 정하여진 국유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또는 해제할 때의 통지사항을 위임함.
처분의 제한(법§53)	20조 허가행위를 위임하였으므로, 제20조 각호에 정하여진 행위 이외의 행위에 대한 동의사항을 위임함.
양도 및 사권설 정의금지(법§54)	문화재의 관리·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공용, 공용 또는 공공상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건을 붙여 그 사용을 허가하는 사항을 위임함.
시도지정문화재의 권고사항(법§55③)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재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 보존할 것을 권고하는 행위를 위임함.
보고등(법§57)	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등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권한을 위임함.
비상시의 문화재보호(법§71)	비상시의 문화재보호조치 명령권한을 위임하여 효율적으로 문화재를 보호함.

위임업무명	위 임 이 유
지원요청(법§72)	비상시의 문화재보호조치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지원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함
토지의 수요 또는 사용(법§75)	국유 또는 공유의 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안에 있는 토지·건물·입목·죽 기타 공작물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권한을 위임하여 효율적으로 문화재를 관리함.

(2) 시(市)·도지사(道知事)에게 위임(委任)(2건(件))

위임업무명	위 임 이 유
허가취소(법§65)	매매 등 영업의 허가사항과 같이 법에서 신설된 허가취소 사항도 시·도지사에게 위임함.
수출등의 금지(비문화재의 확인)(법§76②)	수출이 금지된 동산문화재의 확인업무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었음.

라. 위임해제현황(委任解除現況)(4건(件))

위임업무명	해 제 이 유
기록작성 등(구법§41의5)	조문이 삭제 되었음.
위임업무명	위 임 이 유
조사요청(구법§44의2)	조문이 삭제 되었음.
건설공사 등으로 인한 발굴(구법§44의2)	개정법 제44조(발굴의 제한) 제4항에서 규정하여 위임하였음.
잡종재산처분 및 대금전입(구법부칙§2①3)	조문이 삭제 되었음.

10. 기타 개정사항(改正事項)

가. 지정(指定) 등의 기준결정(基準決定)

국가지정문화재(國家指定文化財)의 기준(基準)을 반드시 문화재위원회(文化財委員會)의 자문(諮問)을 거쳐 정하도록 규정(規定)하고 있었으나, 이는 입법사항(立法事項)일 뿐만 아니라 별도로 규정(規定)하지 않아도 문화재위원회(文化財委員會)의 자문(諮問)을 거칠수 있는 사항(事項)이므로 삭제(削除)하였다(령(令)§1).

나. 지정(指定) 등의 고시내용(告示內容)

문화재의 지정(指定)·인정(認定)이나 해제(解除)하는 경우의 고시(告示)에 있어서 법(法)에서는 그 취지(趣旨)를 관보(官報)에 고시(告示)하도록 규정(規定)하고 있으나 시행령(施行令)에서 문화재(文化財)의 명칭, 수량, 소재지 등의 현황(現況)만을 고시(告示)할 뿐 지정(指定) 등의 취지(趣旨)와 해제(解除)의 사유(事由)는 명시(明示)하지 않았으므로 앞으로 고시(告示)하는 때에는 반드시 지정(指定) 등의 이유를 게재하도록 하였다(령(令)§2).

다. 손실보상(損失補償) 신청제도(申請制度) 개선(改善)

개정(改正)전에는 국가(國家)에 대한 손실보상(損失補償) 신청기간(申請期間)을 2개월(個月) 이내에 하도록 규정(規定)하고 있었으나 2개월(個月) 이후에 손실보상신청(損失補償申請)을 하는 것도 효력(效力)이 있다는 법원(法院)의 판례(判例)등이 있으며 기간(期間)을 명시(明示)하는 특별(特別)한 의미(意味)가 없으므로 이를 삭제(削除)하였다(령(令)§23).

라. 공개상황(公開狀況) 보고내용(報告內容) 및 기간명시(期間明示)

동산(動産)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國家指定文化財)와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를 공개(公開)하는 자(者)는 그 공개상황(公開狀況)을 보고(報告)하도록 하였으나 보고내용(報告內容)과 보고기간(報告期間)이 구체적(具體的)으로 규정(規定)되지 않았으므로 보고사항(報告事項)을 명시(明示)하고 그 기간(期間)을 공개(公開) 종료(終了)후 15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規定)하였다(령(令)§25③, §26).

마. 시(市)·도지정문화재(道指定文化財) 지정(指定) 등의 보고(報告)

시(市)·도 지정문화재(指定文化財)의 지정(指定) 등에 관하여 시(市)·도지사(道知事)가 보고(報告)하도록 규정(規定)하고 있으나, 그 보고기간(報告期間)을 규정(規定)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그 사유(事由)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록 하였다.(령(令)§36).

11. 자연공원구역(自然公園區域)안에서의 사적(史蹟)의 지정(指定) 등(령(令)§47)

가. 자연공원법(自然公園法)의 규정(規定)에 의한 공원구역(公園區域) 또는 그 보호구역(保護區域)안에서 사적(史蹟)·명승(名勝)·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을 지정(指定)하거나 그 보호구역(保護區域)을 지정(指定)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면적(對象面積)이 3만(萬)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 당해 공원관리청(公園管理廳)과 협의(協議)하여 의견(意見)을 듣도록 하였으며 문화재(文化財)의 현상변경(現狀變更)등의 허가행위(許可行爲)를 하는 경우에는 자연공원법(自然公園法) 제23조(條)1항(項) 각호의 행위(行爲)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지역(全地域)에 대해서 협의(協議)하되, 다만 국가지정문화재(國家指定文化財), 시(市)·도지정문화재(道指定文化財) 및 문화재자료(文化財資料)와 그 보호물(保護物)의 증축·개축·이축과 외부를 도색하는 행위를 제외(除外)하도록 하였다.

나. 또한 공원관리청(公園管理廳)과 협의(協議)를 하지 않는 사항(事項)에 대해서는 공원관리업무(公園管理業務)에 참고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정(指定) 또는 허가내용(許可內容)을 통지(通知)하도록 하였다.

12. 시행규칙(施行規則)에 위임(委任)하여 규정(規定)한 사항(事項)

대통령령(大統領令)으로 규정(規定)할 필요가 없거나 서식내용(書式內容) 및 절차(節次)에 관한 사항(事項)은 시행규칙(施行規則)에 위임(委任)하여 규정(規定)하였다.

- 가. “대장(臺帳)”의 비치 및 기록보존사항(記錄保存事項)(구령(舊令)§3)-(규칙(規則)§12)
- 나. 지정(指定)에 관한 제출자료내용(提出資料內容)(령(令)§4)-(규칙(規則)§4①)
- 다. 허가신청내용(許可申請內容)(령(令)§15)-(구령(舊令)§9)
- 라. 국외반출절차(國外搬出節次) 및 내용(內容)(구령(舊令)§12)
- 마. 수리(修理) 등의 국가시행(國家施行)의 통지(通知)(구령(舊令)§14)-(규칙(規則)§24)
- 바. 신고서식(申告書式) 및 내용(內容)(령(令)§21)-(구령(舊令)§15)
- 사. 보조금(補助金) 교부신청절차(交付申請節次)(구령(舊令)§16)-(규칙(規則)§26①)
- 아. 동산(動産)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國家指定文化財)의 공개(公開) 등(구령(舊令)§20④)-(규칙(規則)§37)
 - 자. 매장문화재(埋藏文化財)의 발견신고내용(發見申告內容)(령(令)§29①)-(구령(舊令)§27)
 - 차. 매장문화재(埋藏文化財)의 발굴(發掘) 또는 현상변경(現狀變更)의 결과신고(結果申告)(구령(舊令)§28②)-(규칙(規則)§37)
 - 카. 문화재(文化財)로 인정(認定)되는 매장물(埋藏物) 또는 유실물(遺失物)에 관한 경찰서장(警察署長)의 문화공보부장관(文化公報部長官)에의 보고내용(報告內容)(구령(舊令)§30)-(규칙(規則)§38)
 - 타. 시(市)·도지정문화재(道指定文化財) 및 문화재자료(文化財資料)에 대한 보조금(補助金) 교부신청절차(交付申請節次)(구령(舊令)§36)-(규칙(規則)§41)
 - 파. 시(市)·도지정문화재(道指定文化財) 지정(指定) 등의 보고내용(報告內容)(령(令)§36)(구령(舊令)§37)-(규칙(規則)§42)
 - 하. 문화재사범(文化財事犯) 체포유공자(逮捕有功者) 보상금(報償金) 청구절차(請求節次)(구령(舊令)§40조의6)-(규칙(規則)§49①)

13. 불필요조항(不必要條項) 삭제(削除)

- 가. 가지정(假指定)의 준용규정(準用規定)(구령(舊令)§5②) : “대장(臺帳)”(구령(舊令)§3)이 시행규칙(施行規則)에 위임(委任)되었다.
- 나. 기타 법인(法人)의 범위(구령(舊令)§6) : 법(法)§16에서 포괄적으로 규정(規定)하였다.
- 다. 국가(國家)가 관리(管理)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措置)를 하는 경우에 소유자(所有者)등에게 통지(通知)하였으므로 다시 처분서(處分書)의 교부(交付)는 불필요하여 삭제(削除)(구령(舊令)§7③)
- 라. 수리(修理)는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에 등록(登錄)된 자로 하여금 실시(實施)하여야 한다(구령(舊令)§8②) : 법(法)§18에서 규정하였다.
- 마. 모사(模寫) 등의 표시(구령(舊令)§11)
- 바. 수출(輸出) 등이 금지된 동산문화재(動産文化財)의 확인(確認)(구령(舊令)§12조의 2) :

법(法)§76에서 규정(規定)하였다.

사. 보조금(補助金) 반환시(返還時) 감가금액의 산정방법은 문화공보부장관(文化公報部長官)이 정하도록 하고 삭제(削除)(구령(舊令)§17②)

아. 지정문화재(指定文化財)이외의 문화재(文化財)에 대한 기술지도(技術指導)(구령(舊令)§24)

자. 국유문화재(國有文化財)의 대부 등에 대한 동의 요청방법(구령(舊令)§33) : 국유재산법적용(國有財產法的用)

차. 국유문화재(國有文化財)의 취득 등에 관한 보고 방법(구령(舊令)§34)

카. 지방문화재(地方文化財)의 관리(管理) 또는 수리(修理)에 대한 기술지도(技術指導)(구령(舊令)§38) : 법(法)§58조에서 준용(準用)

타. 지방문화재위원회(地方文化財委員會) 설치(設置)(구령(舊令)§39) : 법(法)§55에서 시(市)·도지정문화재(道指定文化財)의 자문기관(諮問機關)의 설치(設置)에 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조례(條例)로 정(定)하도록 규정(規定)하고 있다.

파. 문화재매매업자(文化財賣買業者)의 자격요건(資格要件)과 결격사유(缺格事由)(구령(舊令)§26③) : 법(法)§62 - §63에서 규정(規定)

하. 문화재매매업자(文化財賣買業者)의 준수사항(遵守事項)(구령(舊令)§26조의2①) : 법(法)§64에서 규정(規定)

가. 표창(表彰)(구령(舊令)§40) : 법(法)§66에 규정(規定)이 있으며 표창시기(表彰時期) 및 추천 등 절차사항은 별도로 규정(規定)할 필요가 없다.

나. 제보(提報)의 처리(處理)(구령(舊令)§40조의3②)

다. 서류(書類)의 제출절차(提出節次)(구령(舊令)§42) : 법(法)과 령(令)이 규정(規定)하는 허가(許可), 신청(申請), 또는 보고(報告) 등에 관한 모든 서류(書類)는 시(市)·도지사(道知事)를 경유(經由)하여야 한다고 규정(規定)하고 있었으나 대통령령(大統領令)으로 법률(法律)을 구속할 수는 없는 것이며, 반드시 경유(經由)를 요(要)하는 사항(事項)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市)·도지사(道知事)를 거치도록 규정(規定)하고 삭제(削除)하였다.

라.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대부하는 재산의 범위(구령(舊令)§43의2) : 법부칙(法附則)에서 삭제(削除)되었다.

IV.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文化財保護法施行規則) 개정(改正)

(83. 9. 19 공포 : 문화공보부령(文化公報部令) 第77號)

순서(順序)

1. 문화재수리업자(文化財修理業者) 등록제도(登錄制度) 개선(改善)
2. 문화재안내표지(文化財案内標識)의 설치(設置)
3.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의 보호(保護)·육성(育成)
4. 문화재수리공사(文化財修理工事)의 감독(監督) 및 준공검사(竣工檢査)
5. 문화재관람료(文化財觀覽料)의 징수(徵收)·사용(使用) 개선(改善)
6. 사찰문화재(寺刹文化財) 보호(保護) 강화(強化)
7. 문화재(文化財) 보호(保護)·관리기술요원(管理技術要員)의 양성(養成)
8. 비문화재(非文化財) 확인제도(確認制度) 개선(改善)
9. 기타 개정사항(改正事項)
10. 시행규칙(施行規則)의 체계정비(體系整備)
11. 별표(別表) 및 별지서식정비(別紙書式整備)
12. 대통령령(大統領令)에서 위임(委任)한 사항(事項) 규정(規定)

1. 문화재수리업자(文化財修理業者) 등록제도(登錄制度) 개선(改善)

문화재수리업자(文化財修理業者) 등록(登錄)과 수리기술자(修理技術者)·기능자(技能者)의 시험(試驗) 및 등록방법(登錄方法) 등을 구체적(具體的)으로 규정(規定)하였다.

가. 수리기술자(修理技術者)의 시험(試驗) 및 등록(登錄)(규칙(規則)§8)

수리기술자(修理技術者)의 필기시험(筆記試驗)의 과목(科目)은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한국사(韓國史) 및 수리기술자(修理技術者)의 종류(種類)별 전공과목(專功科目)으로 하고, 시험방법(試驗方法)은 주(主)·객관식(客觀式)을 혼용(混用)하는 방법(方法)으로 하였으며, 합격자결정(合格者決定)은 총점(總點)의 60%와 매과목(每科目) 40%이상 득점자(得點者)로 정(定)하도록 하였다.

등록(登錄)은 필기시험(筆記試驗)에 합격(合格)한 자(者)에 한(限)하여 학력증명서(學歷證明書) 및 경력증명서(經歷證明書)와 사진(寫眞)등 구비서류(具備書類)를 제출(提出)받아, 이를 확인(確認)함으로써 서류심사(書類審査)를 한 후 등록(登錄)을 하도록 구체적(具體的)으로 절차(節次)를 규정(規定)하였다.

나. 수리기술자(修理技術者)의 기술(技術) 및 자질향상(資質向上)을 위한 보수교육(補修教育)을 매년(每年) 실시(實施)하도록 하였으며, 문화재수리업(文化財修理業)에 종사(從事)하는 수리기술자(修理技術者)는 3년에 1회(回)이상 보수교육(補修教育)을 이수(履修)하도록 하였다(규칙(規則)§9).

다. 수리기능자(修理技能者)의 시험(試驗) 및 등록(登錄)(규칙(規則)§10)

수리기능자(修理技能者)의 필기시험(筆記試驗)은 수리기능자(修理技能者)의 종류(種類)별로 그 기능(技能)을 심사(審査)하고, 합격(合格)한 자(者)에 한하여 경력증명서(經歷證明書)등 구비서류(具備書類)를 제출(提出)받아 서류심사(書類審査)를 거쳐 등록(登錄)을 받도록 하였다.

라. 문화재수리업자(文化財修理業者)의 등록(登錄)(규칙(規則)§11)

수리업자(修理業者)는 일정수의 수리기술자(修理技術者)와 수리기능자(修理技能者)를 보유(保有)하고, 수리업자등록신청서(修理業者登錄申請書)와 구비서류(具備書類)를 제출(提出)하여 종전과 같이 등록(登錄)하도록 하였다.

마. 따라서 문화재수리업자(文化財修理業者)의 등록(登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規定)하였던 「지정문화재수리기술자(指定文化財修理技術者)·기능자(技能者) 및 수리업자등록규정(修理業者登錄規定)」(1970. 12. 31 부령(部令)第22號)을 폐지하였다.

2. 문화재안내표지(文化財案内標識)의 설치(設置)

가. 별도로 규정(規定)하였던 「문화재안내표지(文化財案内標識)에 관(關)한 규정(規定)」(1973. 6. 28 부령(部令)第33號)를 폐지하고 시행규칙(施行規則)에서 규정(規定)하였다(규칙(規則)§13 - §17).

나. 국가지정문화재(國家指定文化財) 또는 그 보호물(保護物)이나 보호구역(保護區域)의 소유자(所有者)·관리자(管理者) 또는 관리단체(管理團體)가 민족문화(民族文化)의 정확한 보급(普及)과 선양(宣揚)을 위하여 안내표지(案内標識)를 설치하고 이를 유지(維持)·관리(管理)하도록 하였다.

다. 안내표지(案内標識)의 종류(種類)는 표석(表石), 안내판(案内板)과 경고판(警告板)으로 구분(區分)하고 관람자(觀覽者)가 잘 볼 수 있는 위치(位置)에 설치(設置)하도록 하였으며 안내판(案内板)을 A, B, C, D형(型)으로 구분(區分)하던 것을 A, B, C형(型)으로 구분(區分)하고 다만, 규격(規格)과 형태(形態)를 주위환경(周圍環境)에 따라 적합(適合)하게 조정(調整)할 수 있게 하였다.

라. 또한 안내판(案内板)의 설치시(設置時)에는 문안의 내용(內容)에 대하여 미리 문화재 관리국장(文化財管理局長)의 감수(監修)를 받도록 함으로써 당해 문화재(文化財)의 유래(由來)·특징(特徵) 및 역사적(歷史的) 가치(價値) 등의 내용(內容)이 고증(考證)에 따라 정확히 기재(記載)될 수 있도록 하였다.

3.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 보호(保護)·육성(育成)

가.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의 전수교육(傳授教育)을 실시(實施)하는 보유자(保有者) 또는 보유단체(保有團體)는 전수교육계획서(傳授教育計劃書)를 매분기개시(每分期開始) 15일전(日前)까지 제출(提出)하여야 하고, 전수교육실시보고서(傳授教育實施報告書)를 매분기(每分期) 종료후(終了後) 15일 이내에 문화재관리국장(文化財管理局長)에게 제출(提出)하도록 하였다. 또한 전수교육(傳授教育)의 실시사항(實施事項)을 지도(指導)·감독(監督)하기 위하여 전수생학습소감서(傳授生學習所感書)를 제출(提出)받을 수 있게 하였다(규칙(規則)§21).

나. 전수장학생(傳授獎學生)의 선정기준(選定基準)은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의 보유자(保有者) 또는 보유단체(保有團體)로부터 6월이상 전수교육(傳授教育)을 받고 있는 자(者)로서 당해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의 기(技)·예능(藝能)에 소질(素質)이 있는 자(者)와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와 관련(關聯)있는 분야(分野)에서 1년이상 활동(活動)한 자(者)로서 당해(當該)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의 기(技)·예능(藝能)을 전승(傳承)하고자 하는 자(者)로 하였다(규칙(規則)§22).

다. 전수장학생(傳授獎學生) 선발연령(選拔年齡)은 20~40재(才)로 제한(制限)하였으며(별표(別表)9), 전수장학생(傳授獎學生)의 교육기간(教育期間)은 5년으로 규정(規定)하여 5년이상 장학금(獎學金)을 지급(支給)하지 않도록 하였다(규칙(規則)§23).

4. 문화재수리공사(文化財修理工事)의 감독(監督) 및 준공검사(竣工檢查)

가. 별도(別途)의 부령(部令)으로 규정(規定)하였던 「문화재수리공사감독(文化財修理工事監督) 및 준공검사규칙(竣工檢查規則)」(1975. 8. 29부령(部令第47號)를 폐지하고, 문화재(文化財)의 수리(修理) 기타(其他) 공사(工事)에 관하여 문화재관리국장(文化財管理局長)은 소속

직원(所屬職員)중에서 감독관(監督官)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根據)만을 두었다(규칙(規則)§26②).

나. 「문화재수리공사감독(文化財修理工事監督) 및 준공검사규칙(竣工檢查規則)」에서는 감독(監督) 및 준공검사(竣工檢查)의 지정(指定)에 관(關)한 사항(事項), 점검(點檢) 및 기술지도(技術指導), 기술직공무원(技術職公務員)의 교육(教育) 실시근거(實施根據)등을 규정(規定)하였으나, 특별히 규정(規定)하는 내용(內容)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감독(監督) 및 기술지도(技術指導)에 관한 근거조항(根據條項)이 다음과 같이 법령(法令)에 규정(規定)되어 있으므로 폐지하였다.

법(法)§14 : 관리방법(管理方法)의 지시(指示)

법(法)§18③ : 수리(修理) 등, 령(令)§6③ : 수리(修理)에 관한 지시(指示)

법(法)§23 : 문화재관리(文化財管理) 및 수리(修理)에 관한 기술지도(技術指導) 요청(要請) 및 감독(監督)·책임자(責任者) 지정(指定)

법(法)§25 : 행정명령(行政命令)

법(法)§28② : 국가(國家)가 경비(經費)를 보조(補助)하는 경우 문화재수리(文化財修理) 기타(其他) 공사(工事)의 감독(監督)

다. 또한 예산회계법상(豫算會計法上) 절차(節次)인 준공검사(竣工檢查)를 위하여 시(市)·도지사(道知事)는 별도(別途)의 규정(規定)이 없어도 준공검사(竣工檢查)를 요청(要請)할 수 있으며, 문화공보부장관(文化公報部長官)은 수리(修理) 기타(其他) 공사(工事)에 관하여 필요시(必要時) 준공검사(竣工檢查)를 요청(要請)하도록 지시(指示)할 수 있는 것이다.

5. 문화재관람료(文化財觀覽料)의 징수(徵收)·사용(使用) 개선(改善)

가. 별도(別途)의 부령(部令)으로 규정(規定)되어 있던 「지정문화재관람료징수(指定文化財觀覽料徵收)등에 관한 규정(規定)」(1973. 8. 22. 부령(部令)第35號)를 폐지하고 시행규칙(施行規則)에 통합(統合)하여 규정(規定)하였다(규칙(規則)§29~§34).

나. 종전의 규정(規定)은 부동산(不動產)에 속(屬)하는 국가지정문화재(國家指定文化財)의 공개(公開)만을 규정(規定)하였으며, 국유문화재(國有文化財)는 규정(規定)에서 제외(除外)시킴으로써 동산문화재(動產文化財)와 국유문화재(國有文化財)의 관람요금액결정(觀覽料金額決定)·징수(徵收) 및 사용(使用)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정(規定)하지 않았으나, 개정(改正)된 규정(規定)은 부동산문화재(不動產文化財)뿐만 아니라 동산문화재(動產文化財)와 국유문화재(國有文化財)도 같이 적용(適用)할 수 있도록 보완(補完)하였다(규칙(規則)§29).

다. 관람료징수(觀覽料徵收)에 있어서 어른·어린이와 단체(團體)로 구분(區分)하고 중(中)·고등학생(高等學生)과 하사(下士)이하의 군인(軍人)을 어린이에 포함하였던 것을 어른·어린이·청소년 및 군인·노인·단체로 구분(區分)함으로써 현실적(現實的)으로 조정(調整)하여 근로청소년과 노인도 할인혜택(割引惠澤)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규칙(規則)§29②).

라. 국가지정문화재(國家指定文化財)의 무료관람대상자(無料觀覽對象者)중 “당해(當該) 국

가지정문화재(國家指定文化財)의 관람요금액(觀覽料金額) 결정권자(決定權者)가 필요(必要)하다고 인정(認定)하는 자(者)”로 추가(追加)하여 사찰(寺刹)에 입장(入場)하는 신도(信徒)의 무료입장(無料入場) 등을 합법적(合法的)으로 인정(認定)할 수 있게 규정(規定)하였다(규칙(規則)§30②).

마. 관람권(觀覽券)에 당해(當該) 문화재(文化財)의 연혁(沿革)을 기재(記載)하는 경우에는 문화재관리국장(文化財管理局長)의 문안감수(文案監修)를 받도록 하여 문화재(文化財)를 올바르게 인식시킬 수 있게 하였으며(규칙(規則)§31①), 관람권(觀覽券)의 규격(規格)이나 형태(形態)를 변경(變更)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전에 문화재관리국장(文化財管理局長)의 승인(承認)을 받도록 하였다(규칙(規則)§31②).

바. 관람료(觀覽料)의 사용제도(使用制度) 개선(改善)

종전(從前)에는 일률적(一律的)으로 국가지정문화재(國家指定文化財)의 관람료수입금(觀覽料收入金)중에서 40%에 해당(該當)하는 금액(金額)을 금융기관(金融機關)에 예치(預置)하고 당해(當該) 국가지정문화재(國家指定文化財)의 원형보존(原形保存) 및 환경정화(環境淨化)에 사용(使用)토록 하였으나, 문화재보수(文化財補修)가 비교적 많은 사찰(寺刹)의 경우는 50%로 높이고,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의 경우는 30%로 낮추는 동시에 그 사용시(使用時)에는 문화재관리국장(文化財管理局長)의 승인(承認)을 받게 함으로써 관람료(觀覽料) 수입(收入)이 당해(當該) 국가지정문화재(國家指定文化財)의 원형보존(原形保存) 및 환경정화(環境淨化)의 목적(目的)외에 유용(流用)되는 것을 예방(豫防)하도록 하였다(규칙(規則)§33).

또한 관람료(觀覽料)를 징수(徵收)하는 자가 매월(每月) 5일 이내에 전월분(前月分)의 관람료징수실적(觀覽料徵收實績)을 시장(市長)·군수(郡守)에게 보고(報告)하도록 하였으나, 이에 추가(追加)하여 관람료징수실적(觀覽料徵收實績)을 보고(報告)받은 시장(市長)·군수(郡守) 또는 구청장(區廳長)이 매분기(每分期) 종료후(終了後) 15일 이내(以內)에 분기별(分期別) 관람료징수실적(觀覽料徵收實績) 등을 문화재관리국장(文化財管理局長)에게 보고(報告)하도록 함으로써 징수상황(徵收狀況)을 파악(把握)하고 당해(當該) 문화재(文化財) 수리공사비(修理工事費)의 국가보조금액(國家補助金額) 결정(決定)에 적정(適正)을 기하도록 하였다.

6. 사찰문화재(寺刹文化財)의 보호(保護) 강화(強化)

우리 나라의 문화재(文化財)는 불교문화(佛敎文化)의 영향(影響)을 받아 사찰문화재(寺刹文化財)가 많은 비중(比重)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오랜 전통건조물(傳統建造物)로써 보수(補修)해야 할 대상이 많으므로 문화공보부장관(文化公報部長官)이 지정(指定)하는 규모(規模)가 큰 사찰(寺刹)은 당해 사찰(寺刹)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國家指定文化財)의 경미(輕微)한 수리(修理)를 위하여 문화재관리국장(文化財管理局長)의 승인(承認)을 얻어 수리기능자(修理技能者)를 고용(雇傭)하고 그 고용(雇傭)에 필요(必要)한 수당(手當)을 예치금(預置金)에서 지급(支給)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찰문화재관리(寺刹文化財管理)에 철저(徹底)를 기하도록 하였으며(규칙(規則)§33⑤)

사찰(寺刹)에 국보(國寶)·보물(寶物) 등 건조문화재(建造文化財)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찰(寺刹)의 주위환경(周圍環境)이 보호(保護)될 수 있도록 국보(國寶)·보물(寶物)의 보호구역(保護區域) 지정기준(指定基準)을 100미터 이내에서 1천(千)미터 이내의 구역(區域)으로

확대(擴大)하였다(규칙(規則)§3①별표(別表)2).

7. 문화재보호(文化財保護)·관리(管理) 기술요원(技術要員)의 양성(養成)

가. 별도의 부령(部令)으로 규정(規定)하였던 「문화재보존기술요원(文化財保存技術要員)의 양성(養成)을 위한 장학금지급규정(獎學金支給規定)」(1972. 9. 2 부령(部令) 第28號)을 폐지하고 시행규칙(施行規則)에 규정(規定)하였으며, 장학금지급대상자(獎學金支給對象者)를 고등학교졸업자(高等學校卒業者)이상으로 하였다(규칙(規則)§56).

나. 복무의무개선(服務義務改善)

문화재(文化財)의 보호(保護)·관리(管理)·수리(修理)에 관한 기술요원(技術要員)의 양성(養成)을 위한 장학금(獎學金)을 지급(支給)받아 교육(教育)이나 연구(研究)를 마친 자(者)에 대하여 장학금(獎學金)을 지급(支給)받은 기간(期間)에 상당(相當)하는 기간(期間)동안 문화재관리국장(文化財管理局長)이 인정(認定)하는 문화재(文化財)의 보호관리분야(保護管理分野)에서 의무복무(義務服務)토록하는 규정(規定)이 있으나, 연구(研究)하는 자(者)의 경우는 복무의무(服務義務)가 곤란하거나 불합리(不合理的)한 점이 많으므로 문화재관리국장(文化財管理局長)이 정(定)하는 연구논문(研究論文)을 제출(提出)함으로써 복무의무(服務義務)의 이행(履行)에 갈음할 수 있게 하였으며(규칙(規則)§59) 연구장학금(研究獎學金)을 받아 제출(提出)한 연구논문(研究論文)은 승인(承認)없이 문화재관리국장(文化財管理局長)이 이를 발표(發表)하기전에 다른 기관(機關)에 제출(提出)하거나 먼저 발표(發表)하지 못하도록 하였다.(규칙(規則)§59③).

8. 비문화재(非文化財) 확인제도(確認制度) 개선(改善)

가. 문화재(文化財)로 오인(誤認)될 우려가 있는 동산(動産)을 확인(確認) 받아 국외(國外)로 반출(搬出)하고자 하는 자(者)에 대한 비문화재(非文化財) 확인업무(確認業務)를 문화재관리국장(文化財管理局長)에서 시(市)·도지사(道知事)에게 위임(委任)하여 업무(業務)의 능률(能率)을 올릴 수 있도록 개선(改善)하였다(규칙(規則)§60①). 지금까지는 시(市)·도(道)에서 비문화재(非文化財)의 확인(確認)을 받으려면 서울로 당해(當該) 물품(物品)을 이동(移動)시키거나, 직접 민원인(民願人)이 많은 경비(經費)를 들여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으로 방문하여야 하는 등 국민(國民)에게 불편(不便)을 주었으므로 이를 가장 가까운 인근지역(隣近地域)에서 확인(確認)받게 함으로써 국민(國民)의 편의(便宜)를 제공(提供)하도록 개선(改善)하였다. 비문화재(非文化財) 확인제도(確認制度)란 문화재(文化財)로 오인(誤認)될 물품(物品)을 감정(鑑定)·확인(確認)하여 국외(國外)로 반출(搬出) 등이 가능(可能)하도록 조치(措置)하는 제도(制度)를 말한다.

나. 비문화재(非文化財) 확인(確認)을 받고자 하는 자(者)는 수수료(手數料)를 납부(納付)하여야 하나, 국가(國家) 또는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나 교육기관(教育機關)이 문화교류(文化交流)를 목적(目的)으로 반출(搬出)하고자 하는 경우와 여행자(旅行者)가 공항(空港)이나 항만(港灣)에서 직접 휴대하여 반출(搬出)하는 경우는 수수료(手數料)를 징수(徵收)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비문화재확인수수료(非文化財確認手數料)는 10%인상(引上)하여 규정

(規定)하였다(규칙(規則)§61 별표16).

9. 기타(其他) 개정사항(改正事項)

가.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의 보유단체(保有團體) 인정기준(認定基準)(규칙(規則)§2).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의 보유단체(保有團體)를 인정(認定)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유단체(保有團體)의 인정기준(認定基準)을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의 예능(藝能) 또는 기능(技能)을 원형(原形)대로 보존(保存)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實現)할 수 있는 단체(團體). 다만, 당해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의 예능(藝能) 또는 기능(技能)의 성질상(性質上) 개인적(個人的)으로는 실현(實現)할 수 없거나 보유자(保有者)로 인정(認定)할 만한 자가 다수(多數)일 경우에 한(限)한다.”로 규정(規定)하였다.

나. 문화재보호구역(文化財保護區域)의 지정업무(指定業務)가 문화재관리국장(文化財管理局長)에게 위임(委任)되었는 바, 문화재관리국장(文化財管理局長)이 문화재보호구역(文化財保護區域)의 지정기준(指定基準)을 자연적조건(自然的條件), 인위적조건(人爲的條件) 기타(其他) 특수(特殊)한 사정(事情)으로 특(特)히 필요(必要)하다고 인정(認定)하여 확대(擴大)하거나 축소(縮小)하여 지정(指定)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문화공보부장관(文化公報部長官)의 승인(承認)을 얻어서 하도록 하였다(규칙(規則)§3②).

다.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의 공개상황(公開狀況)을 보고(報告)하도록 규정(規定)하였을 뿐 공개상황보고서식(公開狀況報告書式)이 없었으나 이를 신설(新設)하였다(규칙(規則)§28).

라. 매장문화재(埋藏文化財) 발견신고(發見申告) 구비서류명시(具備書類明示)

매장문화재(埋藏文化財) 발견신고(發見申告)를 받은 기관(機關)이 문화재관리국장(文化財管理局長)에 보고(報告)하는 경우에 매장문화재(埋藏文化財) 발견신고서(發見申告書)에 첨부(添附)하여야 하는 구비서류(具備書類)를 구체적(具體的)으로 규정(規定)하였다(규칙(規則)§36②).

- 관할(管轄) 경찰서장(警察署長)의 공고문(公告文) 사본(寫本)
- 현품(現品)이나 보관기관(保管機關)의 매장문화재보관증(埋藏文化財保管證)
- 예비평가서
- 사진(寫眞), 4매(枚)(74mm×90mm이상)

10. 시행규칙(施行規則) 본문(本文)에 규정(規定)하였던 문화재지정기준(文化財指定基準) 등을 별표(別表)로 규정(規定)하여 시행규칙(施行規則)의 체계(體系)를 정비(整備)하였다.

가. 국가지정문화재(國家指定文化財)의 지정기준(指定基準)(규칙(規則)§1 별표1)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 지정기준(指定基準)에 있어 “기타(其他) 태권도(跆拳道)·검술(劍術) 등”을 “기타(其他) 의식(儀式)·놀이·무예(武藝)·음식제조(飲食製造) 등

(等)”으로 개정(改正)하였다.

나. 국가지정문화재(國家指定文化財)의 보호물(保護物) 또는 보호구역(保護區域)의 지정기준(指定基準)(규칙(規則)§3 별표(別表)2)

국보(國寶)·보물(寶物)의 보호구역(保護區域) 지정기준(指定基準)에 있어서 사찰건조물(寺刹建造物)인 경우에는 1천(千)미터이내의 구역(區域)을 지정(指定)할 수 있게 하였다.

다. 보상금(報償金) 지급(支給) 등급(等級)의 기준(基準)(규칙(規則)§48 별표(別表)13)

문화재평가액(文化財評價額)에 따른 보상금지급등급기준(報償金支給等級基準)을 조정(調整)하였으며 등급별(等級別) 문화재평가액(文化財評價額)은 다음과 같다.

등급(等級)	개정전(改正前)	개정후(改正後)
1.	1천만(千萬)원 이상	5천만(千萬)원 이상
2.	500만(萬)원 이상	3천만(千萬)원 이상
3.	250만(萬)원 이상	1천(千)500만(萬)원 이상
4.	50만 (萬)원 이상	700만(萬)원 이상
5.	10만(萬)원 이상	300만(萬)원 이상
6.		

라. 일반동산문화재(一般動産文化財)의 등록범위(登錄範圍)(규칙(規則)§51 별표(別表)14

11. 별표(別表) 및 별표서식(別表書式) 정비(整備)

가. 서식(書式)의 용어(用語) 순화(醇化)

“위를 국보(國寶)로 지정(指定)함”을 “위를 국보(國寶)로 지정(指定)합니다”로 변경(變更)하는 등 경칭(敬稱)을 사용하였다. 예, (제1호 서식)

나. 서식(書式)의 규정순서(規定順序) 통일(統一)

“주소, 성명, 생년월일”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로 개정(改正)하는 등 정부서식(政府書式)에 맞춰 기재순서를 통일(統一)하였다. 예, (제6호 서식)

다. 국민(國民)에게 부담(負擔)을 주거나 민원(民願)의 대상(對象)이 되는 각종(各種) 구비서류(具備書類)를 간소화하여 국민(國民)의 편익(便益)을 도모하였다. 즉 이력서, 주민등록초본, 신원증명서 등을 제외(除外)시켰다.

라. 민원신청서식(民願申請書式)에는 처리기간(處理期間)과 수수료(手數料)를 명시(明示)하였고, 관계법조문(關係法條文)과 구비서류(具備書類) 및 뒷면에 업무처리절차(業務處理節次) 등을 알 수 있도록 하여 국민(國民)의 편의(便宜)를 도모하였다. 예, (제16호 서식)

마. 각종(各種) 서식(書式)의 용지(用紙) 및 규격(規格)을 정부양식(政府樣式)으로 통일(統一)하여 정비(整備)하였다.

바. 문화재매매업자(文化財賣買業者)는 문화재매매업허가표지(文化財賣買業許可標識)를 함석판(板)으로 제작(製作)하여 영업장소(營業場所)에 게시(揭示)하도록 하였던 별도(別途) 규정(規定)을 폐지하고, 문화재매매업허가증(文化財賣買業許可證)을 영업장소(營業場所)에 게시(揭示)하도록 하였다(규칙(規則)§44).

사. 별표(別表) 신설(新設)

국가지정문화재(國家指定文化財) 지정기준(指定基準)(별표(別表)1)
 보호물(保護物) 또는 보호구역(保護區域) 지정기준(指定基準)(별표(別表)2)
 중요(重要)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 전수장학생(傳授獎學生) 선발연령(選拔年齡)(별표(別表)9)
 국가지정문화재(國家指定文化財) 공개(公開) 관람료(觀覽料) 징수구분(徵收區分)(별표(別表)10)
 보상금(報償金) 지급(支給) 등급(等級)의 기준(基準)(별표(別表)13)
 일반(一般) 동산문화재(動產文化財)의 등록(登錄) 범위(範圍)(별표(別表)14)
 아. 별표(別表) 변경(變更)
 비문화재(非文化財) 확인(確認) 표지(標識)(별표(別表)15) : 공항(空港)·항만(港灣)에서 사용(使用)하는 표지(標識)
 자. 서식(書式) 신설(新設)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 보유단체(保有團體) 인정서(認定書)(第7號)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 전수교육(傳授教育) 계획서(計劃書)(第22號)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 전수교육(傳授教育) 실적보고서(實績報告書)(第23號)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 전수생(傳授生) 학습소감서(學習所感書)(第24號)
 이수증(履修證)(第25號)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 교육보조자(教育補助者) 추천서(推薦書)(第26號)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 전수장학생(傳授獎學生) 추천서(推薦書)(第27號)
 서약서(誓約書)(第28號)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 공개상황(公開狀況) 보고서(報告書)(第37號)
 차. 서식(書式) 변경(變更)
 문화재수리기술자(文化財修理技術者), 기능자(技能者) 등록신청서(登錄申請書)·응시원서(應試願書)(第10號 서식(書式))
 수리기술자(修理技術者), 기능자(技能者) 등록증(登錄證)(第11號 서식(書式)) : 수첩(手帖) 형식(形式)
 수리업자(修理業者) 등록증(登錄證)(第13號 서식(書式)) : 수첩(手帖) 형식(形式)
 단체관람신청서(團體觀覽申請書)·영수증(領收證)·관람권(觀覽券)(第14號 서식(書式)) : 어른·어린이 등 서식통합(書式統合)
 감정의뢰서(鑑定依頼書)→감정의뢰(鑑定依頼)(회보(廻報))서(書)(第63號 서식(書式)) 비문화재확인원(非文化財確認願)→비문화재확인원(非文化財確認願)(서(書))(第66號 서식(書式)) : 일반용(一般用)
 비문화재확인원(非文化財確認願)→비문화재확인원(非文化財確認願)(서(書))(第67號 서식(書式)) : 공항(空港)·항만용(港灣用)
 카. 서식(書式) 통합(統合)
 문화재(文化財) 매입(買入)(매도(賣渡))대장(臺帳)(第53號 서식(書式))

12. 대통령령(大統領令)에서 위임(委任)한 사항(事項)을 규정(規定)

- 가. 지정(指定)에 관한 자료(資料)(규칙(規則)§4①)
- 나. 국가지정문화재(國家指定文化財) 대장(臺帳)(규칙(規則)§12)

- 다. 수리(修理) 등의 국가시행(國歌施行)의 통지(通知)(규칙(規則)§24)
- 라. 보조금(補助金) 교부신청자(交付申請者) 절차(節次)(규칙(規則)§26)
- 마. 동산(動産)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國家指定文化財) 공개(公開) 등의 허가신청절차(許可申請節次)(규칙(規則)§27)
- 바. 매장문화재(埋藏文化財)의 발굴(發掘) 또는 현상변경(現狀變更)의 결과신고(結果申告)(규칙(規則)§37)
- 사. 문화재(文化財)로 인정(認定)되는 매장물(埋藏物) 또는 유실물(遺失物)에 관한 경찰서장(警察署長)의 문화공보부장관(文化公報部長官)에 보고내용(報告內容)(규칙(規則)§38)
- 아. 시(市)·도지정문화재(道指定文化財) 및 문화재자료(文化財資料)에 대한 보조금(補助金) 교부신청절차(交付申請節次)(규칙(規則)§41)
- 자. 시(市)·도지정문화재(道指定文化財) 지정(指定)등의 보고내용(報告內容)(규칙(規則)§42)
- 차. 문화재사범(文化財事犯) 체포유공자(逮捕有功者) 보상금(報償金) 청구절차(請求節次)(규칙(規則)§49①)

V. 결론(結論)

이상으로 문화재관계법령(文化財關係法令)의 개정내용(改正內容)과 그 취지(趣旨)를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종합해 보면 이번 법령개정(法令改正)으로 문화재(文化財)의 개념(概念)을 보완(補完)하였고, 문화재(文化財)의 관리체계(管理體系)와 각종(各種) 행정제도(行政制度)를 개선(改善)함으로써 문화재보호관리(文化財保護管理)의 선진화(先進化)를 추구(追求)하였고, 허가(許可)와 신고(申告) 등의 민원사항(民願事項)중 불필요(不必要)한 규제사항(規制事項)은 완화(緩和)하여 민주적(民主的)이고 합리적(合理的)인 국민편의(國民便宜)위주의 민원처리(民願處理)를 하도록 개선(改善)하였으며, 외국(外國)의 문화재(文化財)를 보호(保護)하도록 규정(規定)함으로써 문화재관리(文化財管理)의 국제화(國際化)를 도모하였다.

또한 문화공보부장관(文化公報部長官)에게 집중(集中)된 행정권한(行政權限)을 대폭 문화재관리국장(文化財管理局長)과 시(市)·도지사(道知事)에게 위임(委任)하여 행정(行政)의 능률(能率)을 가져오게 하였고, 문화재(文化財)를 적극적으로 보호(保護)하기 위하여 국가관리(國家管理)의 범위(範圍)를 확대(擴大)하고 사찰(寺刹) 등에 대해서는 장기적(長期的)인 보호조치(保護措置)를 강구하도록 개선(改善)하였으며, 법체계(法體系)에 있어서도 각종(各種) 개별부령(個別部令)들을 통(統)·폐합정비(廢合整備) 하였고, 각종(各種) 서식(書式)을 정비(整備)함으로써 법(法)의 운용(運用)을 용이(容易)하게 하였다.

이와같이 문화재관계법령(文化財關係法令)이 대폭적으로 개정(改正)되어 이해(理解)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법령개정(法令改正)은 어떤 분야(分野)의 업무(業務)를 마무리짓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各自) 개정내용(改正內容)을 명확히 숙지하여 앞으로의 문화재관리업무(文化財管理業務)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다.

이번 법령정비(法令整備)와 관련하여 앞으로 추진(推進)하여야 할 중요과제(重要課題)를 몇가지 생각해 보았다.

1. 국가지정문화재(國家指定文化財) 등의 재평가(再評價)
2. 문화재관련용어(文化財關聯用語)의 한글화 및 용어정의(用語定義)와 개념재정립(概念再定立)

3. 지정문화재(指定文化財) 이외의 문화재(文化財)를 시(市)·도지사(道知事)에게 업무이관(業務移管) 관리(管理)
4.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의 보유단체인정(保有團體認定) 및 보호(保護)·육성대책(育成對策) 강구
5. 국유문화재(國有文化財)의 재산관리(財産管理) 및 총괄업무(總括業務) 활성화(活性化)
6. 문화재(文化財) 수리(修理)의 제도개선사항(制度改善事項) 적용(適用)
7. 시(市)·도별(道別)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조례(條例) 개정추진(改正推進)
8. 문화재관람료(文化財觀覽料) 징수(徵收)·사용방법(使用方法) 개선(改善)에 따른 조치(措置)
9. 사찰문화재(寺刹文化財) 보호강화(保護強化)에 따른 조치(措置)
10. 각종(各種) 서식변경(書式變更)에 따른 조치(措置)
11. 기타 법(法)·시행령(施行令)·시행규칙(施行規則)의 개정(改正)에 따르는 전반적(全般的)인 조치(措置)

이상 열거한 사항(事項)외에도 할 일이 많다. 자칫 깊이 생각하지 않고 지금까지의 관행(慣行)이나 상식(常識)대로 이해(理解)하고 처리(處理)하면 착오가 올 수 있으므로 문화재(文化財)를 다루는 모든 관계자(關係者)들은 개정법령(改正法令)을 자세히 살펴보고 적용(適用)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법령정비(法令整備)가 문화재(文化財)의 효율적(效率的)인 관리(管理)에 보다 기여(寄與)하기를 바라며, 앞으로 더욱 개선(改善)되고 발전(發展)되어 후손들에게 조상(祖上)의 영광(榮光)된 문화유산(文化遺産)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란다.